www.sdm.go.kr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2021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보고서

이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간 활동실적을 서대문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같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보에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11년 출범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올해로 12년째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여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합의한 운영성과를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2021년도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활동은 우선, 구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대문구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수의계약과 같은 공공사업에 대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으로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사업의 발주단계부터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그에 따른 결과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감시평가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계약이 이행되었는지, 불필요한 공공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시행된 사업으로 인해 성과가 있었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하고 감시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옴부즈만은 구민과 행정의 소통창구로 불편을 해결하고, 구청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며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서대문구청 공무원들과 옴부즈만 운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문석진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일동

목 차

제1부 옴부즈만 운영개요

제1장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9

제2장 제6기 옴부즈만 소개 11

제3장 업무처리 절차 등 12

제2부 옴부즈만 운영성과

제1장 고충민원 처리 19

1. 고충민원 처리 결과
2. 2021년 고충민원 처리 현황

제2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29

1.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처리 결과
2. 2021년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현황

제3부 고충민원 조사처리

제1장 도시교통분야 37

1. 불법주차 단속반의 소극적 민원처리 조치 요망
2. 불법주차 단속요원과 당직실 직원에 대한 불만 제기

제2장 재개발재건축분야 55

1. 북아현 과선교 지연에 대한 재조사 요청
2. 아파트 단지 내 위험 보도 조치요청

제3장 일반행정분야 61

1. 동주민센터 통장 모집과정 문제점 제기

제4장 환경청소분야 66

1. 관공서 청소용품 납품업체 선정 관련 민원
2. 주택 공사 소음, 분진 발생 조치요청

제5장 보건위생분야 73

1. 어린이집 근처 흡연자들 조치요청

contents

제4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제1장 공사 77

1. 신촌역광장 재조성 공사(토목)
2. 도시재생 맞춤형 임대주택 신축공사(건축, 토목, 기계, 조경)
3. 가재울청소년센터 신축공사(건축)
4. 신촌 현대백화점 일대 하수암거 개량공사(1차)
5. 구립가좌제일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긴급
6. 바람산 이동편의시설 등 개선사업
7. 인왕산 둘레길 조성공사
8. 야호놀이터 조성사업

제2장 용역 116

1.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협상에의한계약 장기계속)(2차)
2. 모래내시장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
3. 신촌역광장 재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협상에의한계약)
4. 2021년 GIS데이터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5.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용역(협상에의한계약 긴급)
6. DMC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7.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Q)
8.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설계 용역(PQ)

제3장 수의계약 145

1. 홍제3동 개미마을 일대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
2. 서대문구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제작 용역
3. 코로나19 확산방지용 주민센터 및 보건소 물품구매(얼굴인식카메라)
4. 코로나19 및 미세먼지 대응 저소득층 마스크 구매
5.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마스크) 구매
6.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아동용 마스크 구매
7. CCTV회선 자가정보통신망 전환 정보통신장비 구매설치
8. 서대문 공공산후조리원 설계용역

9.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축 설계용역
10. 2020년 집중호우 피해지(홍제동 471등 2개소) 복구공사
11. 2020년 집중호우 피해지(현저동 1-150등 3개소) 복구공사
12. 실락어린이공원 석축 정비사업
13. 하천변 식생 및 조경시설 정비
14.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홍은동 산11-18 등 3개소]

제1부 옴부즈만 운영개요

제1장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9

제2장 제6기 옴부즈만 소개 · 11

제3장 업무처리 절차 등 · 12

제1장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 도입배경

서대문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2.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3. 추진경과

- 2011. 04. 27.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1. 05. 11. 시민감사옴부즈만(5인) 공개모집 및 선정
- 2011. 05. 30. 제1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 2011. 06. 01.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제1차 정례회의 개최)
- 2011. 06. 15.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
- 2012. 03. 17. 시민감사옴부즈만 인터넷 민원접수 개시
- 2012. 03. 20. 2011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 2012. 05. 29.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 옴부즈만 운영사례 발표
- 2013. 02. 27. 제5회 국민신문고 대상 옴부즈만 분야 수상
- 2013. 03. 26. 「2012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3. 05. 29. 제2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4, 신규1)
- 2013. 11. 19. 「시민감사옴부즈만 토론회」 개최
- 2014. 03. 19. 「2013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5. 03. 26. 「2014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5. 05. 27. 제3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3, 신규1)
- 2016. 04. 28. 「2015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6. 05. 01. 제3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1)
- 2017. 03. 29. 「2016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17. 06. 01. 제4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1, 신규2)
- 2017. 11. 30.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워크숍」지방옴부즈만 발전방안 발표
- 2018. 03. 27. 「2017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개최
- 2018. 07. 01. 제4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신규2)
- 2018. 10. 11. 「지방옴부즈만 워크숍」서대문구 운영현황 및 사례발표
- 2019. 02. 27. 제7회 국민권익의 날 옴부즈만 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
- 2019. 03. 13. 「2018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개최
- 2019. 06. 01. 제5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신규2)
- 2019. 12. 17. 「서울시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서대문구 사례발표
- 2020. 02. 24. 제5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신규1)
- 2020. 04. 27. 「2019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개최
- 2020. 07. 01. 제5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1)
- 2021. 05. 11. 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2021. 06. 01. 제6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3)
- 2022. 02. 23. 제6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재위촉1)

제2장 제6기 옴부즈만 소개

류정수 대표옴부즈만

● **주요경력**

공학박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前)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

前) ㈜브니엘컨설턴트 대표이사

김현국 옴부즈만

● **주요경력**

前) 감사원 감사관

· 지방행정감사국 제4과장(부이사관) 등 역임

前) IBK신용정부(주) 준법관리인

現)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자문위원

한인혜 옴부즈만

● **주요경력**

건축사

前) ㈜21세기건축사사무소

前) ㈜케이더블유엠씨

現) 디아이건축사사무소

박상권 옴부즈만

● **주요경력**

공학박사, 토목시공 기술사

前) 서울시・서초구 재난치수과장

現) ㈜범한 건설사업부 사업책임

이주한 옴부즈만

● **주요경력**

변호사

現) 서초법률사무소

現)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원

제3장 업무처리 절차 등

1. 옴부즈만 자격, 임기, 직무 및 권한

1-1 옴부즈만의 자격

-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1-2 옴부즈만의 임기 및 구성

-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지 위	위촉방법	인원(임기)	신 분	주요기능
구청장소속 업무독립 수행	구의회 동의 후 구청장 위촉	5명(2년)	비 상 임 민간위촉	고충민원 조사 및 청렴계약 감시・평가

1-3 옴부즈만의 직무

-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부의한 사건의 조사·처리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청렴계약 이행여부 감시·평가

1-4 옴부즈만의 권한

(1) 시정요구 등의 조치요구 권한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게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구청장은 특별히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함.

(2) 조사결과 공표 권한

옴부즈만은 고충 민원 조사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조사결과와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음.

옴부즈만의 조치의견 유형

· 시정요구	행정기관의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 이를 취소, 변경, 개선하거나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 감사요구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행위
· 권고 및 의견 표명	위법 ·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정책 및 제도, 현 실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합리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2. 옴부즈만 업무처리 절차

2-1 고충민원 조사처리

(1) 민원인이 방문, 서면, 청렴포털(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접수 후 다가오는 옴부즈만 정례회의(주1회)를 거쳐 조사 여부를 결정

(2) 정례회의에서 조사가 결정되면 조사 착수 후 3일 이내 민원인에게 조사가 착수되었음을 통지하고 관계부서에도 조사 실시 통보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3) 조사는 1개월 이내 종료하여야 하며 처리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 시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민원인에게 통지

(4) 조사가 완료되면 정례회의에서 조사내용 검토 및 조치의견을 결정 후 민원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관계부서에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 등 조치의견을 통보

(5) 옴부즈만의 조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부서는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지

2-2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 평가

(1) 관련 부서장은 매년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옴부즈만에 제출

(2) 옴부즈만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감시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활동 범위를 정하여 운영계획 수립

(3)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감시·평가 대상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후, 대상별 계약 이행실태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 감시평가 시행

(4) 감시평가 대상 사업기간 또는 용역 및 구매 기간이 종료되는 매년 말 감시평가 활동결과 검토 및 관계부서에 대한 조치의견을 정례회의에서 결정 후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 등 조치의견을 통보

(5) 옴부즈만의 조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부서는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지

〖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 〗

- 총공사비 3억 원 이상의 공사
- 5천만 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 그 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2-3 활동실적 보고 및 공표

(1) 대표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옴부즈만 활동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

(2)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아래의 사항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구보에 공표

〚 옴부즈만 공표사항 〛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 옴부즈만의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 옴부즈만의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불수용 현황

제2부 옴부즈만 운영성과

제1장 고충민원 처리 • 19

제2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 29

제1장 고충민원 처리

1. 고충민원처리 결과

1-1 민원처리 결과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건수	직접조사									이첩 등 처리				
		계	조치의견												
			감사요구	시정요구	권고	의견표명	조정	불인용	진행 중	계	이첩	단순안내	각하	취하
2011년(6~12월)	5	3	1	1	-	1	-	-	-	2	-	-	1	1
2012년	72	30	1	2	13	1	1	12	-	42	36	5	1	-
2013년	126	28	-	-	13	5	5	5	-	98	83	10	1	4
2014년	97	20	-	-	9	3	4	4	-	77	65	7	3	2
2015년	65	18	-	1	7	3	1	6	-	47	28	10	5	4
2016년	44	22	-	-	11	7	3	1	-	22	14	2	4	2
2017년	58	25	-	-	16	7	1	1	-	33	28	3	1	1
2018년	51	24	-	-	18	4	1	1	-	27	18	5	-	4
2019년	35	13	1	-	4	4	2	2	-	22	15	2	-	5
2020년	57	8	1	-	2	4	-	2	-	49	44	-	1	4
2021년	36	8	-	-	5	3	-	-	-	28	22	2	1	3
계	646	199	4	4	98	42	18	34	0	447	353	46	18	30

2021년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36건으로 2020년에 비해 21건이 감소하였고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하여 처리한 민원은 8건, 이첩민원은 28건으로 이첩민원은 주로 구청 해당부서로의 이첩사항이며 각하민원 1건은 사인간의 행위에 의한 민원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

민을 보호하는 우리 구 옴부즈만 조례 제1조를 들어 각하하였다.

옴부즈만에서 직접 조사한 민원은 도시교통, 재개발 분야의 민원이 많았고 구청의 처분에 대해 옴부즈만에게 확인을 요구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다. 조사는 현장 확인과 민원인 및 관련 직원 면담, 관계 서류 검토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의견의 유형이 권고, 의견표명, 감사요구 등으로 분류되어 서대문구청에 조치를 통보하게 된다.

1-2 민원 분야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건수	민원 분야													
		건축주택	도시계획	재개발재건축	도시교통	환경청소	공원녹지	복지행정	일반행정	재무행정	도로관리	하수관리	노점영업	보건위생	문화체육
2011년 (6~12월)	5	4	1	-	-	-	-	-	-	-	-	-	-	-	-
2012년	72	8	-	7	13	7	1	1	10	4	6	2	7	5	1
2013년	126	10	-	18	28	16	9	-	12	7	9	3	11	3	-
2014년	97	11	1	13	22	25	3	1	8	-	13	-	-	-	-
2015년	65	16	4	11	9	13	2	-	7	-	3	-	-	-	-
2016년	44	14	1	5	4	1	4	-	14	-	1	-	-	-	-
2017년	58	20	1	4	13	5	2	-	3	-	5	1	2	1	1
2018년	51	22	-	8	1	3	5	3	2	-	2	2	1	2	-
2019년	35	14	-	4	4	3	1	1	8	-	-	-	-	-	-
2020년	57	23	-	1	3	1	7	3	7	2	4	1	-	5	-
2021년	36	5	-	7	4	5	4	-	7	-	-	2	-	2	-
계	646	147	8	78	101	79	38	9	78	13	43	11	21	18	2

☞ 2021년 고충민원 접수 중 각하민원 1건을 제외하고도 건수 계(36)가 같은 것은 한 건의 고충민원에 두 가지 분야(도시교통, 재개발재건축)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야별 민원 접수현황을 볼 때 2021년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민원 전체 36건 중 재개발·재건축분야(7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며 재개발·재건축구역의 환경개선 요청, 위험 요소 제거 요청,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확인 요청이 주요 사례이다.

1-3 옴부즈만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현황

(단위 : 건, %)

구분	조치의견	조 치 결 과					수용률
		계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진행 중	
2011년 (6~12월)	3	3	2	1	-	-	100%
2012년	17	17	17	-	-	-	100%
2013년	18	18	18	-	-	-	100%
2014년	12	12	8	4	-	-	89%
2015년	11	11	11	-	-	-	100%
2016년	18	18	18	-	-	-	100%
2017년	23	23	21	2	-	-	95.6%
2018년	22	22	18	4	-	-	90.9%
2019년	9	9	6	2	1	-	81.4%
2020년	5	5	4	1	-	-	93.3%
2021년	8	8	7	-	-	1	87.5%

* 수용률(%) 계산 시 수용은 1, 불수용은 0, 일부수용은 1×(수용건수/조치의견건수)를 적용하였다.

옴부즈만의 조치의견에 대한 구청의 조치결과가 일부수용인 건은 조치의견에 대해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유로 한 건의 민원 조사결과에 따른 옴부즈만의 여러 건의 조치의견 중 일부만 조치이행이 있어 완전 수용되지 않은 사항이다.

2. 2021년 고충민원 처리 현황

2-1 고충민원 창구별 접수건수 및 처리기간

총계	창구별 접수 건수			처리 기간(일)		
	청렴포털(인터넷)	방문	구청장 부의	평균	최대	최소
36	36	0	0	29	52	19

※ 처리기간 계산은 옴부즈만 직접조사 민원에 한함.

2-2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접수건수	직접조사								기타				
	계	조치의견											
		감사요구	시정요구	권고	의견표명	조정	불인용	진행 중	계	이첩	단순안내	각하	취하
36	8	-	-	5	3	-	-	-	28	22	2	1	3

<민원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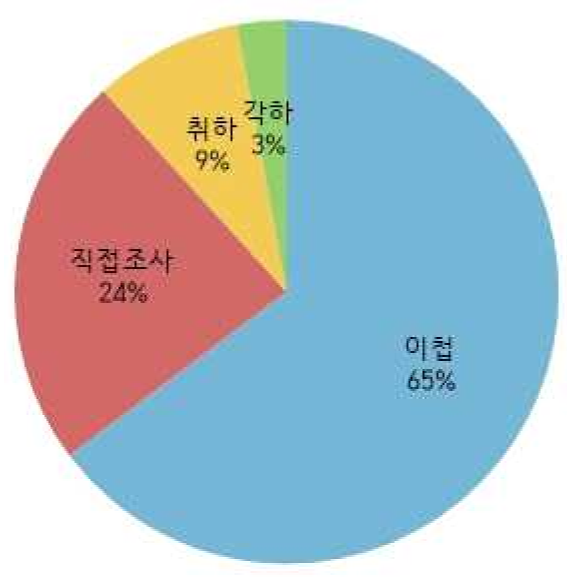

<직접조사 (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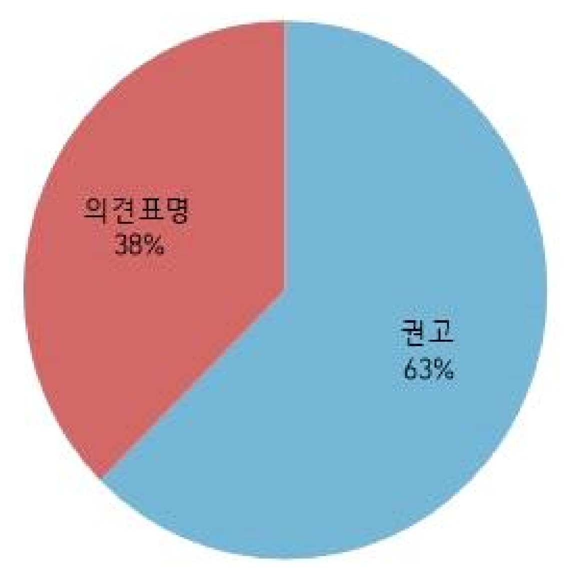

2-3 고충민원 분야별 현황

접수 건수	고충 민원 분야													
	건축 주택	도시 계획	재개발 재건축	도시 교통	환경 청소	공원 녹지	복지 행정	일반 행정	재무 행정	도로 관리	하수 관리	노점 영업	보건 위생	문화 체육
36	5	-	7	4	5	4	-	7	-	-	2	-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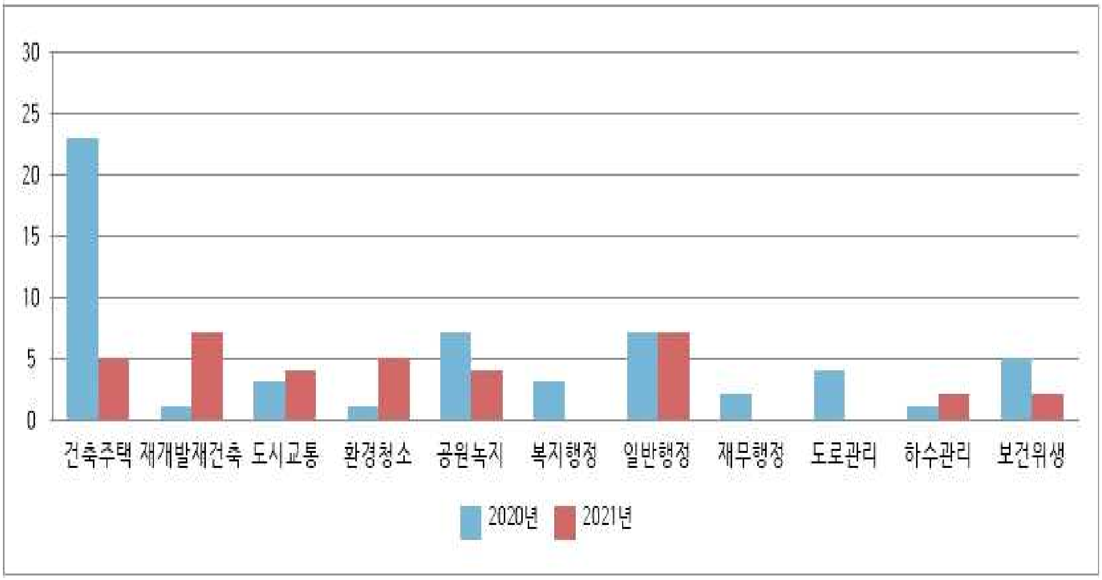

2-4 조치의견에 대한 부서 조치결과 현황

계					권고				의견표명				
계	수용	일부 수용	불 수용	진행 중	계	수용	일부 수용	불 수용	계	수용	일부 수용	불 수용	진행 중
8	7	-	-	1	5	5	-	-	3	2	-	-	1

2-5 고충민원 조사처리 현황

❶ 조치유형 ⇨ 권 고

연번	민원요지	옴부즈만 의견 요약	구청 수용여부
1	불법주차 단속반의 소극적 민원처리 시정 요청, 실질적인 단속이 아닌 경고장 부착만 하는 이유 확인 요청	추후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제기될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을 확인한 후 대응하기 바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주·정차 담당공무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수용
2	북아현 1-1, 1-2구역 과선교 공사지연 불만 제기, 재조사 요청	당초 과선교 공사 지연 및 촉구 민원이 접수된 바 있어 옴부즈만 조사과정에서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안전시공대책 등 보완 요청한 바 있음.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이며 장기 민원 사항임을 감안, 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수용
3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으나 경고장 부착에 그친 불법주차 단속요원과 그 과정에서 나태한 근무를 한 당직실 요원에 대한 문제 제기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코너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인 바, 추후 민원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PDA단속 후 과태료 부과하기를 바람. 다만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처벌 수위를 정할 권한을 없는 당직실 근무자의 민원 대응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임.	수용

연번	민원요지	옴부즈만 의견 요약	구청 수용여부
4	△△동주민센터 통장 모집 문제점 제기. 통장의 역할, 활동시간, 활동비 설명 등이 미흡한 것에 대한 시정 요청. 서류접수 등 일련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 요청	통장 모집 절차, 공고, 서류 접수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추후 통장 모집 공고 시 통장의 역할, 활동 시간 등을 상세히 안내하길 바람.	수용
5	관공서 청소용품 납품업체 선정 관련 불만 제기. 신생업체들도 제안 및 견적 제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향후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용품 구매 시 다수의 업체가 품평회 및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 발굴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수용

❷ 조치유형 ⇨ 의견표명

연번	민원요지	옴부즈만 의견 요약	구청 수용여부
1	○○어린이집 맞은편에 위치한 음식점 종업원 등이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근방에서 흡연을 하므로 조치 요청	보건소 지역건강과에서는 위 장소에 금연구역 도로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경각심을 유도하고 위 음식점에도 위 구역에서의 금연에 협조를 유도하시기 바람.	수용

연번	민원요지	옴부즈만 의견 요약	구청 수용여부
2	주택 공사 소음, 분진 발생에 대한 조치 요청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소음 기준에는 달하지 않지만 불편 민원이 지속되는 만큼 건축주 및 공사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소음저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 감독하여 추가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바람.	수용
3	아파트 재건축 사업구간일부 동(棟)의 경사가 심하여 보행에 위험하므로 조치 요청	도로 종단경사를 검토하여 차량의 주행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바람. 현재설계보다 보도폭을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	진행중

2-6 기타 민원 처리 현황 (이첩, 취하, 각하, 단순안내)

① 이첩

연번	민원요지	처리 사항	담당부서(기관)
1	별관청사 관리 요청	이첩	행정지원과
2	과선교 설치 및 도로열선 설치	이첩	도시재정비과
3	과선교 계약서 불이행에 대한 조사촉구	이첩	도시재정비과
4	재건축사업 신속한 시공사 선정 요청	이첩	주택과
5	△△공원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확인 요청	이첩	푸른도시과
6	축대 붕괴 위험 조치 요청	이첩	푸른도시과, 주택과
7	◎◎아파트 후문~안산 등산로 주변 꿀벌통 제거 요청	이첩	푸른도시과
8	유진상가 지하도(열린 홍제천길) 인도와 개천 사이 가림막 철거 요청	이첩	안전치수과

연번	민원요지	처리사항	담당부서(기관)
9	서대문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러 수정 요청	이첩	스마트정보과
10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내체육시설 이용 관련 건의	이첩	도시관리공단 (서대문문화체육회관)
11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관련 민원	이첩	주택과
12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공고 및 수당 관련 민원	이첩	주택과
13	홍제천 제초작업 및 방역 요청	이첩	푸른도시과, 지역건강과
14	명지대사거리 버스정류장 출근길 방송촬영 불만 제기	이첩	교통관리과
15	아파트 신축 공사 소음 관련 민원	이첩	기후환경과
16	□□아파트 사용승인 관련	이첩	주택과
17	홍제천(포방교 부근)돌계단으로 인한 보행자 상해	이첩	안전치수과
18	북가좌동 빌라건축 소음	이첩	기후환경과
19	○○아파트 쓰레기배출지 이전 요청	이첩	청소행정과
20	서대문세무서 앞 불법주차오토바이 단속요청, 주민 운동시설 설치 건의	이첩	교통관리과, 도시재정비과
21	안산 산책로 안전레일 설치 요청	이첩	푸른도시과
22	신촌 길거리노래방 행사, 집회제한 불만 제기	이첩	행정지원과

❷ 취하

연번	민원요지	처리사항
1	부당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시정 요청	취하
2	서대문구청 주차장 오토바이 사고 조치 요청	
3	가좌보건지소 강사 모집 관련 문제 제기	

❸ 각하(조사제외)

연번	민원요지	각하이유(조사제외)
1	△마트 주차장 화물작업으로 인한 보행자 상해	사인간의 행위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리를 지키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외의 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 참조

❹ 단순안내

연번	민원요지	안내사항
1	북아현 재개발 구역 임대아파트입주자격요건 검토 요청	도시재정비과로 이첩 결정하였으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창구로 동일인이 동일 민원 접수하였고 해당 부서에서 답변 완료하였기에 해당 창구 기회신 내용을 참고할 것을 단순안내
2	△△아파트 방음벽 설치 관련 민원	구청 해당 부서에 시정 요구할 사항이 없음을 설명, 통지함

제2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1.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처리 결과

1-1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결과 현황

(단위 : 건)

구분	감시 평가 대상					감시 평가 결과					
	계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계	감사 요구	시정 요구	권고	의견 표명	특이사항 없음
2011년 (6~12월)	30	11	14	5	-	31	1	2	-	19	9
2012년	22	15	5	1	1	22	-	-	1	12	9
2013년	25	6	11	2	6	25	-	-	6	12	7
2014년	22	8	9	3	2	22	-	-	-	14	8
2015년	17	8	2	3	4	17	1	-	8	6	2
2016년	20	10	4	-	6	20	-	2	10	5	3
2017년	18	10	5	3	(7)	20	1	-	10	6	3
2018년	20	7	2	1	10	22	1	-	9	7	5
2019년	20	6	2	1	11	25	6	-	10	3	6
2020년	24	4	8	2	10	27	2	-	11	3	11
2021년	30	8	8	-	14	36	4	-	11	15	6
계	248	93	70	21	71	267	16	4	76	102	69

☞ 2021년 감시평가 대상 분류는 경쟁입찰(공사, 용역, 물품)과 수의계약으로 분류하였고,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상으로 전자공개수의(2인견적), 유찰에 의한 수의 건이다. 감시평가 대상 건수와 결과 건수가 다른 것은 한 건의 사업평가에 대해 조치의견 유형이 여러 개인 경우이다. (예: 감사요구 및 권고)

2021년 청렴계약 감시평가는 경쟁입찰로 진행한 공사 8건, 용역 8건, 수의계약 14건으로 총30건을 실시하였다.

서대문구청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계약 과정에 있어 입찰, 계약체결, 이행 및 결과 등 전반에 거쳐 감시평가 활동을 하였다. 사업 발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와 적정한 자격제한에 따른 입찰여부, 업체의 성실한 계약 이행여부, 사업 과정에서 설계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 준공 후

의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시·평가하였다.

1-2 옴부즈만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현황

(단위 : 건, %)

구분	조치의견	조 치 결 과					수용률
		계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진행 중	
2011년	22	22	20	2	-	-	100%
2012년	13	13	12	1	-	-	100%
2013년	18	18	17	1	-	-	97%
2014년	14	14	12	2	-	-	93%
2015년	15	15	13	1	1	-	90%
2016년	17	17	15	2	-	-	94%
2017년	17	17	15	2	-	-	94%
2018년	17	17	14	3	-	-	91%
2019년	19	19	15	4	-	-	90%
2020년	16	16	16	-	-	-	100%
2021년	36	36	-	-	-	36	-

* 2013년도부터 수용률(%) 계산 시 수용은 1, 불수용은 0, 일부수용은 1×(해당 청렴계약 건의 수용건수/조치의견건수)를 적용하였다.

2. 2021년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현황

연번	분야	사업명	부서명	옴부즈만 조치의견
1	공사	신촌역광장 재조성 공사(토목)	도시재생과	-
2	공사	도시재생 맞춤형 임대주택 신축공사(건축, 토목, 기계, 조경)	도시재생과	권고 및 의견표명
3	공사	가재울청소년센터 신축공사(건축)	아동청소년과	권고 및 의견표명
4	공사	신촌 현대백화점 일대 하수암거 개량공사(1차)	안전치수과	의견표명
5	공사	구립가좌제일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긴급	여성가족과	권고
6	공사	바람산 이동편의시설 등 개선사업	푸른도시과	의견표명
7	공사	인왕산 둘레길 조성공사	푸른도시과	감사요구 및 의견표명
8	공사	야호놀이터 조성사업	푸른도시과	감사요구 및 권고
9	용역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협상에의한 계약 장기계속)(2차)	도시재생과	-
10	용역	모래내시장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	도시재생과	-
11	용역	신촌역광장 재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협상에의한계약)	도시재생과	-
12	용역	2021년 GIS데이터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스마트정보과	의견표명
13	용역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용역(협상에의한계약 긴급)	일자리경제과	-

연번	분야	사업명	부서명	옴부즈만 조치의견
14	용역	DMC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주택과	의견표명
15	용역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Q)	청소행정과	권고 및 의견표명
16	용역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설계 용역(PQ)	토목과	감사요구 및 권고
17	수의	홍제3동 개미마을 일대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 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	도시재생과	의견표명
18	수의	서대문구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제작 용역	문화체육과	의견표명
19	수의	코로나19 확산방지용 주민센터 및 보건소 물품 구매(얼굴인식카메라)	보건위생과	의견표명
20	수의	코로나19 및 미세먼지 대응 저소득층 마스크 구매	사회복지과	의견표명
21	수의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마스크) 구매	어르신복지과	
22	수의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아동용 마스크 구매	여성가족과	
23	수의	CCTV회선 자가정보통신망 전환 정보통신장비 구매설치	스마트정보과	의견표명
24	수의	서대문 공공산후조리원 설계용역	지역건강과	권고, 의견표명
25	수의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축 설계용역	청소행정과	-
26	수의	2020년 집중호우 피해지(홍제동 471등 2개소) 복구공사	푸른도시과	권고
27	수의	2020년 집중호우 피해지(현저동 1-150등 3개소) 복구공사	푸른도시과	감사요구 및 권고
28	수의	실락어린이공원 석축 정비사업	푸른도시과	권고

연번	분야	사업명	부서명	옴부즈만 조치의견
29	수의	하천변 식생 및 조경시설 정비	푸른도시과	의견표명
30	수의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홍은동 산11-18 등 3개소]	푸른도시과	권고

제3부 고충민원조사처리

제1장 도시교통분야 • 37

1. 불법주차 단속반의 소극적 민원처리 조치요망
2. 불법주차 단속요원과 당직실 직원에 대한 불만제기

제2장 재개발재건축분야 • 55

1. 북아현 과선교 지연에 대한 재조사 요청
2. 아파트 단지 내 위험 보도 조치요청

제3장 일반행정분야 • 61

1. 동주민센터 통장 모집과정 문제점 제기

제4장 환경청소분야 • 66

1. 관공서 청소용품 납품업체 선정 관련 민원
2. 주택 공사 소음, 분진 발생 조치요청

제5장 보건위생분야 • 73

1. 어린이집 근처 흡연자들 조치요청

1. 불법주차 단속반의 소극적 민원처리 조치 요망

[1] 민원개요

가. 민원신청 : 2021. 3. 4.

나. 민 원 인 : ○○○

다. 민원내용

민원인은 ‘서대문구 **길 **’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이 사건 차량은 대중교통으로 사용되는 택시였고, 4바퀴 중 2바퀴만 사유지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2바퀴는 도로에 걸쳐 있었다)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어, 이를 신고하였으나, 서대문구청 교통관리과에서 ‘해당구간은 개인 소유의 대지로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회신하여, 해당 구간이 개인 소유의 사유지가 맞는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경고장만 올려두고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업무시간 이후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조사

가. 담당자 미팅 및 현장 확인(2021. 3. 11. 목)

해당 지역은 서대문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정기순찰 노선으로 정하여 주간(09:00~18:00)에는 수시로 계도를 병행한 단속(과태료 부과)을 실시하고 있으나, 야간 및 심야시간 등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이 사건 도로와 같은 이면도로의 경우, 서대문구의 부족한 주차장 현실을 고려하여 과태료 보다는 계도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민원이 제기된 이 사건 차량의 경우, 4바퀴 중 2바퀴가 명백하게 사유지가 아니라 도로에 걸쳐 있고 불법주차로 인한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

하고, 민원인에게 2021. 3. 4. '해당 구간은 개인소유의 대지로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회신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주차 장소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 판단하여 회신한 것임을 인정하였음. 추후, 불법주차 민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 사건 민원을 회신한 담당자에게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킬 것을 약속함.

다만, 해당 차량 소유자가 불법 주정차 된 건물에 거주하는 자이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한 것으로 보였으며, 반복된 민원에 기계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함.

나. 주・정차 위반 관련 법규 확인

1) 도로교통법은 정차 및 주차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도로교통법 등으로 주・정차 금지 장소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같은 법 제33조는 주차금지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정차 및 주차의 의미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주차'는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한편, <u>위 법률 제32조 제7호, 제33조 제3호는, 시・도경찰청장은 '도로</u>

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데, 노란색 실선 혹은 점선을 그어놓은 노면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3.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 시・도경찰청장이 그어놓은 노란색 실선 및 점선 노면표시는 아래 그림의 설명과 같이, 주차를 금지 또는 주·정차 모두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이나 개인의 사유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의 요청이 있지 않는 한, 황색 실선 또는 점선을 긋지 않고(개인의 사유지 위에 황색 실선 또는 점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 해당 실선 또는 점선을 지우고 있음), 황색 실선 또는 점선이 그어져 있다면, 해당 실선 또는 점선 부분부터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도로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황색 실선이 그어진 경우, 주·정차 차량이 황색 실선에 물리거나 선 밖에 주차를 하는 경우 모두 주차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색 점선이 그어진 구역의 주차 차량 역시, 해당 점선에 물리거나 선 밖에 주차를 하는 경우 모두 주차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한편, 도로교통법 제34조의2는 같은 법 제32조 제7호 또는 제33조 제3

호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도로가 위 특례 규정에 해당한다면 정차나 주차가 가능할 것입니다.

<u>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u>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시 ·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 시간 ·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u>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5조(주 · 정차 금지장소의 특례)</u> ① 법 제34조의2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가 허용되는 차의 종류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한한다. 〈2009. 12. 1 신설〉 ② 법 제34조의2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허용 시간은 1일 24시간(출근시간대 07:00~09:00, 퇴근시간대 18:00~20:00 제외)이며, 1회 주차허용 시간은 최대 30분까지로 한다. 〈2012. 9. 21 개정〉 <u>③ 법 제34조의2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허용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와 편도 2차로 또는 편도 3차로가 결합된 도로, 편도 2차로와 편도 2차로 또는 편도 3차로가 결합된 도로 및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일방통행로 포함) 중 별표5와 같다.</u> 〈2009. 12. 1 신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별표5>

197	서대문 (서대문구)	표방터6길	표방터6길29	표방터6길21	20	6	1차로	편측
198	서대문 (서대문구)	표방터길	표방터길178	표방터길165	20	6	1차로	편측
199	서대문 (서대문구)	명지길	명지길84	명지길90	20	6	1차로	편측
200	서대문 (서대문구)	명지길	명지길78	명지길82	20	6	1차로	편측
201	서대문 (서대문구)	명지길	명지길74	명지길76	10	6	1차로	편측
202	서대문 (서대문구)	명지길	명지길62	명지길68	15	6	1차로	편측
203	서대문 (서대문구)	명지길	명지길54	명지길58	10	6	1차로	편측
204	서대문 (서대문구)	명지길	명지길40	명지길46-1	15	6	1차로	편측
205	서대문 (서대문구)	명지길	명지길28	명지길36	20	6	1차로	편측

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법규 확인

1) 도로교통법 제35조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는 위 법률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정하고 있는데, 단속인력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되 자치구 사이의 단속의 공정성, 형평성을 위하여, 교통이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4차로 이상)은 서울시가 지선 및 이면도록 등 관내 모든 지역 단속은 자치구가 각 담당하여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르면, ① 단속구역과 관련하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예외 없이 단속하고 교통소통에 지장 없는 도로(이면도로 포함)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단속시간과 관련하여, 평일 07:00~22:00(출·퇴근시간대는 집중 단속) 및 토·공휴일 13:00~21:00 단속하고, 점심시간대 및 심야시간대(21:00이후)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단속방법과 관련하여, 중점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이 아닌,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와 같은 일반단속구역의 경우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을 진행(이동조치 또는 유예기간 경과 후 불응차량 단속 및 견인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원신청에 의한 단속의 경우, 다수민원 신청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 후, 계도 및 단속 전・후에 대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주차・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게 직무 및 친절교육을 최소 1회 실시함으로 민원인, 불법주・정차 차량 운전자 등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u>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주차・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u> ①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차・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2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3. 12. 30.> ②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2) 서대문구는 서울시의 위 지침과 유사한 내용의 ‘불법주・정차 단속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서대문구 관내 왕복 6차선 미만 지선 및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① 단속구역과 관련하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예외 없이 단속하는 것에 더 나아가 민원다발 이면도로를 일반단속 구역이 아닌 중점단속 구역으로 관리하여 단속을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단속시간은 서울시의 위 지침과 동일하고, ③ 단속방법과 관련하여, PDA단속(인력단속)의 경우 2회 촬영 후,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면도로에 주차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한 경우, 사유지 등에 주차했더라도 차량의 바퀴가 보도를 2/3정도 침범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지역 내 통학로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상습(민원다발)지역에 대하여 상시 단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인력단속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민원다발지역 단속용 고정식 CCTV 신규 설치・운영’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 단

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이면도로는 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에서 제6호 기재 교차로, 횡당보도, 건널목 등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혹은 위 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터널 안 및 다리 위 등 주차금지 장소에는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2조 제7호, 제33조 제3호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란색 점선의 노면표시를 한 곳인 바,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금지된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도로(**길 **)는, i)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구역 · 시간 ·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하였거나, ii)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5조 및 별표 5에 따른 주 · 정차 금지장소의 특례 장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 위에 주차를 하는 경우 불법 주차 차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차량의 일부가 노란색 점선 안쪽인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일부가 노란색 점선을 물린 것에 더 나아가 노란색 점선 바깥쪽으로 주차 된 바, 불법 주차 차량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이 사건 도로가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가 아님은 교통관리과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도로는 6m 이상이고, 이 사건 차량은 사유지 쪽으로 바짝 붙어 주차하여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이 방해될 염려가 적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시간은 서울시 및 서대문구의 위 지침에 따를 때 집중 단속 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서대문구는 민원다발 이면도로의 경우 중점단속 구역으로 관리하여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단속할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해당 도로에서의 민원이 1인에 의한 것이든 다수에

의한 것이든 구별하지 않고 ‘민원다발 이면도로’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민원인이 동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 방해가 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 주인은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빌라의 거주자이며,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의 부족한 주차장 현실을 고려하여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였던 서대문구 교통관리과 담당자의 사정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도로가 비록 이면도로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고, 이 사건 차량은 사유지를 넘어 노란 점선을 침범하여 주차되어 있는 바, 서대문구의 위 지침에 따라 PDA단속 방법에 따라 2회 촬영 후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다면 일정 시간과 방법으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지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의 위 지침에는 불법주정차 상습(민원다발)지역에 대하여 ‘단속용 고정식 CCTV신규 설치·운영’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도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조치의견 : 권고

가. 추후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을 확인한 후 대응하시기 바람

나. 서대문구 교통관리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주·정차 담당공무원 교육에 만전을 가하시기 바람

[5] 부서 조치결과

단속직원들에게 교통관리과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반복적인 민원사항이라도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주의 깊게 업무처리할 것을 지시함.

2. 불법주차 단속요원과 당직실 직원에 대한 불만 제기

[1] 민원개요

가. 민원신청 : 2021. 3. 16.

나. 민원내용

민원인은 '서대문구 **길 **' 이면도로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어, 2021. 3. 16. 이 사건 차량을 신고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20. 3. 16. 19시 15분에 출동한 주・정차 담당공무원이 경고장을 부착하였다는 답변을 받고, 서대문구 당직실에 전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장만 부착한 이유 등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민원인은 그 과정에서 당직실이 나태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경고장만 올려두고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당직실이 나태하게 근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조사

가. 담당자 미팅(2021. 3. 25. 목)

1) 당시 신고를 받은 당직근무자가 나태하게 근무하였는지를 행정지원과 ○○○ 주임에게 확인한 결과, ① 최초 불법 주・정차 신고는 전자로 접수되었고, ② 신고를 확인한 주・정차 담당공무원이 즉시 출동하여 경고장 부착을 하였으나, ③ 민원인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당직실에 문제제기 하였고, ④ 당시 당직근무자는 민원인의 요청을 듣고 주・정차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민원인의 문제제기를 전달하였음.

○○○ 주임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경고장 부착으로 그칠 것인지, 과태료 등을 부과할 것인지 등은 관련 규정 및 현장 상황에 따라

교통관리과 혹은 주·정차 담당공무원이 결정하는 사안으로 당직근무자는 민원인의 요청을 전달만 해 줄 뿐, 주·정차 담당공무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함.

2)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경고장 부착으로 그친 이유에 대하여 교통관리과 △△△ 주무관에게 확인한 결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주차장 막음, 도로 막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 단속을 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이면도로 특성상 이동조치 및 경고장 부착 등 행정계도 후에 반복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함.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이동조치와 행정 계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경고장부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함. 추후, 불법주차 민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회신함.

나. 현장 확인(2021. 4. 9. 수)

이 사건 차량이 주·정차된 곳의 상황은 다음과 같음. 이 사건 도로의 폭은 6미터 이상임. 이 사건 차량 앞면에 빌라가 위치해 있음. 과거, 빌라 앞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표시를 해 두었으나, 주차표시를 지우고, 노란 점선의 주차금지 노면표시를 하였음.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부분에도 노란 점선의 주차금지 노면표시가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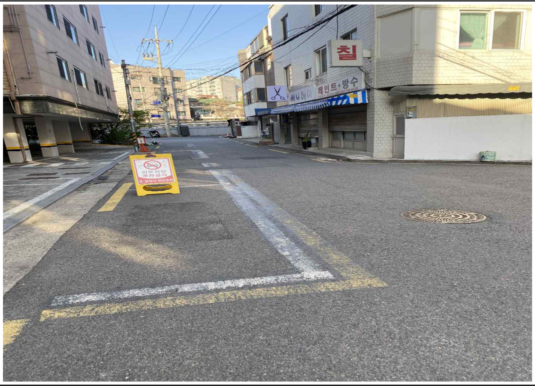

다. 주·정차 위반 관련 법규 확인

1) 도로교통법은 정차 및 주차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도로교통법 등으로 주·정차 금지 장소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같은 법 제33조는 주차금지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정차 및 주차의 의미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주차’는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한편, 위 법률 제32조 제7호, 제33조 제3호는,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데, 노란색 실선 혹은 점선을 그어놓은 노면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3.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 시・도경찰청장이 그어놓은 노란색 실선 및 점선 노면표시는 아래 그림의 설명과 같이, 주차를 금지 또는 주·정차 모두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3) 한편, 도로교통법 제34조의2는 같은 법 제32조 제7호 또는 제33조 제3

호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도로가 위 특례 규정에 해당한다면 정차나 주차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5조(주·정차 금지장소의 특례)

① 법 제34조의2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가 허용되는 차의 종류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한한다. 〈2009. 12. 1 신설〉

② 법 제34조의2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허용 시간은 1일 24시간(출근시간대 07:00~09:00, 퇴근시간대 18:00~20:00 제외)이며, 1회 주차허용 시간은 최대 30분까지로 한다. 〈2012. 9. 21 개정〉

③ 법 제34조의2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허용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와 편도 2차로 또는 편도 3차로가 결합된 도로, 편도 2차로와 편도 2차로 또는 편도 3차로가 결합된 도로 및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일방통행로 포함) 중 별표5와 같다. 〈2009. 12. 1 신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별표5>

223	서대문(서대문구)	연서길	연서길29	연서길17	70	6	1차로	편측
224	서대문(서대문구)	연서내길	연서내길12	연서내길22	40	6	1차로	편측
225	서대문(서대문구)	홍연1길	홍연1길4	홍연1길13	40	6	1차로	편측
226	서대문(서대문구)	밤고개길	밤고개길10	밤고개길18	50	6	1차로	편측
227	서대문(서대문구)	홍연길	홍연길17	홍연길13	15	7	1차로	편측
228	서대문(서대문구)	홍연길	홍연길22-21	홍연길24	20	6	1차로	편측
229	서대문(서대문구)	홍연길	홍연길34-3	홍연길38	30	6	1차로	편측
230	서대문(서대문구)	홍연길	홍연길54	홍연길74	50	7	1차로	편측
231	서대문(서대문구)	홍연길	홍연길74	홍연길86	50	7	1차로	편측
232	서대문(서대문구)	한마음3길	한마음3길28	한마음3길36	80	8	1차로	편측
233	서대문(서대문구)	한마음3길	남가좌2동409-18	남가좌2동409-47	100	8	1차로	편측
234	서대문(서대문구)	명지대길	홍은동401-18	홍은동401-12	70	7	1차로	편측
[illegible]	서대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라.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법규 확인

1) 도로교통법 제35조는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는 위 법률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정하고 있는데, 단속인력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되 자치구 사이의 단속의 공정성, 형평성을 위하여, 교통이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4차로 이상)은 서울시가 지선 및 이면도록 등 관내 모든 지역 단속은 자치구가 각 담당하여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르면, ① 단속구역과 관련하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예외 없이 단속하고 교통소통에 지장 없는 도로(이면도로 포함)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단속시간과 관련하여, 평일 07:00~22:00(출·퇴근시간대는 집중 단속) 및 토·공휴일 13:00~21:00 단속하고, 점심시간대 및 심야시간대(22:00이후)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단속방법과 관련하여, 중점단속구역, 특별단속구역이 아닌,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와 같은 일반단속구역의 경우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을 진행(이동조치 또는 유예기간 경과 후 불응차량 단속 및 견인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원신청에 의한 단속의 경우, 다수민원 신청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 후, 계도 및 단속 전·후에 대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주차·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게 직무 및 친절교육을 최소 1회 실시함으로 민원인, 불법주·정차 차량 운전자 등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u>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주차·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u> ①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차·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2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3. 12. 30.> ②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2) 서대문구는 서울시의 위 지침과 유사한 내용의 '불법주·정차 단속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서대문구 관내 왕복 6차선 미만 지선 및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① 단속구역과 관련하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예외 없이 단속하는 것에 더 나아가 민원다발 이면도로를 일반단속 구역이 아닌 중점단속 구역으로 관리하여 단속을 진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단속시간은 서울시의 위 지침과 동일하고, ③ 단속방법과 관련하여, PDA단속(인력단속)의 경우 2회 촬영 후,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주정차 지역 내 통학로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상습(민원다발)지역에 대하여 상시 단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인력단속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민원다발지역 단속용 고정식 CCTV신규 설치·운영'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 단

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이면도로는 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에서 제6호 기재 교차로, 횡당보도, 건널목 등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혹은 위 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터널 안 및 다리 위 등 주차금지 장소에는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2조 제7호, 제33조 제3호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란색 점선의 노면표시를 한 곳인 바,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금지된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도로(**길 **)는, i)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구역 · 시간 ·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하였거나, ii)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5조 및 별표 5에 따른 주 · 정차 금지장소의 특례 장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 위에 주차를 하는 경우 불법 주차 차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이 사건 도로는 6m 이상이고, 과거 빌라 앞 도로에 주차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빌라 앞 도로에 주차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도로 코너에 이 사건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이 방해될 염려가 적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차량은 3거리 코너에 주차되어 있어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시간은 서울시 및 서대문구의 위 지침에 따를 때 집중 단속 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서대문구는 민원다발 이면도로의 경우 중점단속 구역으로 관리하여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단속할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한편, 민원인은 당직실의 나태한 근무에 대하여도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민원은 이 사건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경고장 부착에 그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당직근무자에게 주·정차 담당공무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정할 권한은 없는 바, 민원인의 문제제기 사항을 주·정차 담당공무원들에게 전달한 당직근무자의 민원 대응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 봉사자로서 민원인에게 당직근무자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주·정차 담당공무원들에게 민원의 심각성 등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는 있었을 것입니다.

라.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시 ·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 시간 ·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다면 일정 시간과 방법으로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지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의 위 지침에는 불법주정차 상습(민원다발)지역에 대하여 '단속용 고정식 CCTV신규 설치 · 운영'을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도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도로가 비록 이면도로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고, 이 사건 차량은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코너에 주차되어 있는 바, 서대문구의 위 지침에 따라 PDA단속 방법에 따라 2회 촬영 후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조치의견 : 권고

추후 불법 주 · 정차 차량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등 조치할 것

[5] 부서 조치결과

해당 민원 제기 구간에 시설물(탄력봉)을 설치하였으며, 위 구간과 같은 이면도로 도로모퉁이 불법주차 시 통행안전에 지장을 주므로 경고장 부착보다는 이동조치를 하겠음. 또한 반복적·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고 이동조치 불응 시 과태료 단속을 하도록 현장단속반에 지시함.

1. 북아현 과선교 지연에 대한 재조사 요청

[1] 민원개요

가. 민원신청 : 2021. 03. 13.(토)

나. 민원발생장소 : 북아현 1-1,1-2구역 과선교 부근

다. 민원내용

1) 민원인은 2019년 이미 과선교 공사지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지서(제2019-☆호. 2019년)를 받았으나

2) 소문에 의하면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착공을 미루고 공사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검토한다는 이유가 궁금함

3)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2020년에 현수막 게첨 후 안전기원제를 지냈을 뿐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으니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는 방안은 없는지, 과선교사업지연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를 요청함

[2] 조사

가. 현장 조사(2021.3.20.)

1) 과선교 위치도 및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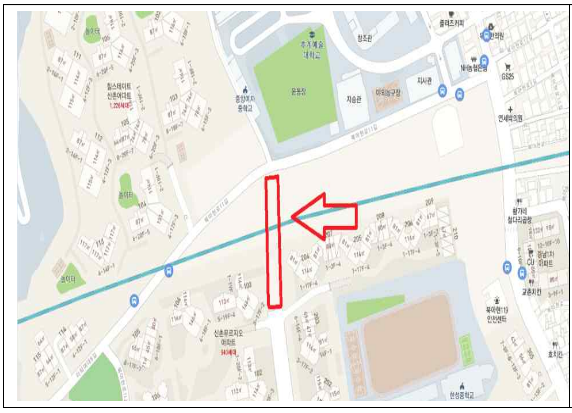

2) 주변 현황

나. 사업 추진상황

1) 당초 본 구간에 녹지 과선교를 설치토록 사업비 113억원을 예치 받았으나 설계결과 도로교 공사비만 102억여원으로 녹지교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2) 이후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과선교(도로교와 녹지교) 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 조합측과 구청간 공사비 추가금 확보안을 협의하여 공사비 추가분은 구청에서 계획 수립 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중임.

3)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확인이 요구되어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자문과 검토결과 공사비 과다 의견 및 안전한 시공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어 해당부서(도시재정비과)에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안전 시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해당부서에서 1-1조합과 시공사와 합의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4) 해당부서에서는 안전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변경 및 설계감리용역을 조합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과선교(도로교와 녹지교)

공사를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3] 판단

가. 과선교 공사 지연 및 착공 촉구 등 민원이 접수되어 시민감사옴부즈만 조사과정에서 설계검증 및 설계경제성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대책 등을 철저히 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과선교 공사가 지연될 경우 북아현 뉴타운 전체 순환도로 기능이 지연되어 주민불편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조합 및 관련 업체와 신속한 협의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본 사업은 장기민원사항임을 감안 구청장대책회의를 3회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점검추진하고 있으므로 조합, 시공사, 구청간 협의를 조속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4] 조치의견 : 권고

가. 당초 과선교 공사 지연 및 촉구 등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시민감사옴부즈만 조사과정에서 사업비 적정성 검토 필요 및 안전시공대책 등의 사항을 보완토록 요청함

나.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는 과선교가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이며 장기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부서 조치결과

설계감리용역을 통한 설계변경 및 공사비 검증과 안전성 검토 수행

2. 아파트 단지 내 위험 보도 조치요청

[1] 민원개요

가. 민원신청 : 2021. 12. 1.

나. 민원내용

1) 민원 신청인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구간의 예비입주자로 사전 점검차 현장 방문 후 단지 주변 도로 보행자 인도의 경사가 급해 안전사고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단계적 시정요청

2) 재건축단지 외곽도인 ☆번지는 보행도가 급경사(약24%)로 안전조치 없이 위험하게 지나다니고 있으니 현장 나가서 보고 판단하여 안전 난간 설치 등 빠른 조치 요구

[2] 조사

가. 조사일시 : 2021.12.9.

1) 현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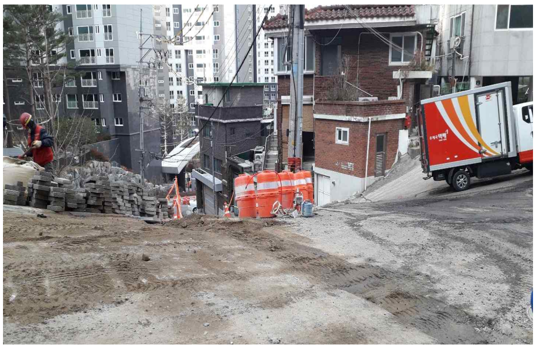

A → B 방향, 종단경사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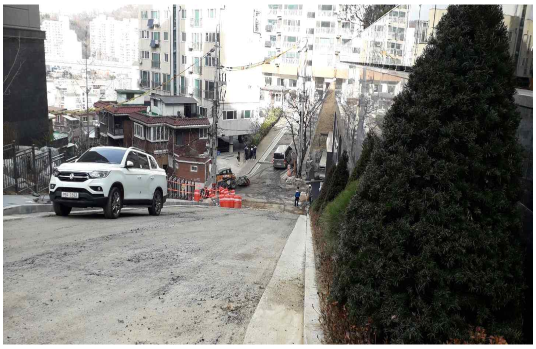

D → A 방향, 종단경사 26%

2) 예비입주자 사전점검 이후 현재 급경사 보도구간은 보행동선을 차단하고 옹벽설치 등 보행경사 관련규정에 근접하도록 개선안을 검토중에 있음. (도시재정비과, 토목과 협의 등)

3) 해당아파트 신축공사(도로) B→A 방향의 도로폭 B=5~6m, 연장 약

L=70m 구간의 현재 종단구배는 약 24%로 도로폭만 B=10m로 확장 시공되어 있고, 보행자 보도폭 B=1.4m로 기존도로의 종단경사로 보행동선이 급하게 설치되어 있음.

4) 단지 외곽도로인 **길 A→E 방향의 도로폭 B=10m, 연장 약 L=160m 중에서 A→D 방향의 하향도로 경사는 신설도로임에도 경사가 약 26%의 급경사로 설치되어 있고, A→C(☆☆아파트) 방향의 도로폭 B=10m, 연장 약 L=30m 구간은 A지점에 접합되어 인도와 차도가 관련규정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 민원 내용대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

5) A지점에서 C지점(☆☆아파트)은 기존도로의 종단경사(약 13%)로 진입도로가 설치되어 있음.

[3] 판단

가. B→A 구간 기존주택구간의 도로종단경사 조정이 기존주택 출입대문 진입이 1-3계단 지반의 단차로 기존 출입문의 진·출입이 가능하게 종단경사를 단계별로 조정하여 도로선형을 조정하고, 보행동선 및 경사는 보행관련 규정에 맞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나. B지점, D지점의 차량 우회전 시 현재 도로의 가각부분은 우회전 차량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 A지점→D지점 간 도로는 본 사업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아파트 외곽 도로를 연결하는 신설되는 도로이나 종단 경사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어야 하나, 현재 아파트 신축이 완료되어 종단경사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완시설 설치·관리 등 검토가 요구됨. (난간, 동절기 열선 설치 등)

라. 도로 B→A구간, C(☆☆아파트)→A구간, D→A구간의 접속지점, A지점 주차장 진입 지점의 좌우측도로(B,C,D) 접속지점의 종단경사를 현행보다 가능한 한 완만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됨.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가. 본 건과 관련하여 위 판단에서 의견제시한 것과 같이 도로의 종단은

기존도로로 조정 종단경사를 검토하여 향후 차량의 주행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됨.

나. 보도의 현재설계는 폭 B=1.4m 이상이나 도로설계 보도폭을 최대한 확보하는것이 바람직할 것.

[5] 부서 조치결과

진행중

1. 동주민센터 통장 모집과정 문제 제기

[1] 민원개요

가. 민원신청 : 2021. 3. 27.

나. 민원내용

1) 직장인도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고 서류를 넣었는데 직장인이 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부정적인 질문으로 시작함

2) 개선사항 이야기 했으나 수용하지 않음.

3) 통장의 역할, 활동비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음.

4) 봉사하려고 신청했는데 마음에 상처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5) 진행하는 직원이 면접관의 눈치 보면서 안내하고 또 인터넷상에 다른 지원자의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것 등 혹시 내정자가 있었던 게 아닌지 조사바람.

6) 공지 시 모든 모임에 무조건 참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재하기 바람.

[2] 조사

가. 문헌과 서류 조사

1) 통장의 개념과 역할

- 시의 하부행정기관인 동의 행정보조 인력으로 자치구 하위행정기관인 통을 대표하여 행정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이며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대리하여 공적업무를 수행한다.

2) 통장제도의 운영

-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서대문구의 경우는 자격기준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 인터넷(동사무소 홈페이지 공지)과 공고문 게시로 공개모집
- 2년 임기 3회까지 연임가능
- 월급은 기본수당과 복지수당, 월 31만원(연 372만원)
- 연2회 상여금 (연 60만원)
- 매 회의 때마다 회의 수당 2만원(월1~2회)

3) 통장의 기능

- 지역의 민방위대장의 역할, 민방위 통지서 배부
-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보고, 연2회 주민등록 일제 조사 업무보조
- 초등학교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통지서 배부
- 적십자회원 가입 및 모금 안내, 회비납부용지 배부
- 지방세 고지서 및 정부 행정시책 홍보물 배부
- 주민 요망사항 파악･보고, 지역 화합 단결 및 복지증진, 봉사, 취약 계층 발굴
- 관내 각종 시설 점검, 순찰 및 수방, 제설 지원
- 각종 사업 신고접수, 각종 통계 조사업무, 국공유 재산실태 사실 확인
- 기타 비상연락, 경로잔치, 애경사 참석, 마을 기금운영
- 산불예방, 질병대처 및 동에 필요한 사항 등(코로나 백신접종 수송 등)

4) 선발방법(서대문구)

- 모집공고 후 동장 이하 5명의 면접관(마을자치, 주민복지, 행정민원팀의 팀장과 통회장, 통부회장)이 면접하여 신임 있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
- 동점일 경우 연장자 우선

나. 직접 조사

1) 담당자와 통화(2021. 4. 2. 금)

- 본 건은 2주 간 모집공고하여 만 40세 남녀 1명 씩 총 2명이 지원함

동 공고 제2021 - 호

통 장 모 집 공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주민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 봉사와 구정발전을 위해 통장으로 활동하실 분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 년 3월 2일

동장

1. 모집대상 : 통장

2. 모집인원 : 1명

3. 신청자격 조건

○ 서대문구 해당통 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자로서

○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

○ 지역사회 봉사 및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

4. 임 기 : 2021. 4. 1 ~ 2023. 3. 31(2년)

5. 자격제한

○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의 되거나 불신을 받는 자

○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자

6. 모 집 기 간 : 2021. 3. 2.(화) ~ 3. 16.(화)

7. 최종결과 : 2021. 3. 26(금) 개별통보

※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 2021. 3. 24(수) 15:00예정, 주민센터

8. 구비서류 : 주민센터 홈페이지(http: sdm.go.kr/) 출력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수령

○ 통장지원 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기타자료 각 1부(통장신청자의 봉사활동자료, 기관표창수상자료 등)

9. 접 수 처 : 동주민센터

10.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본인이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서류 제출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심의 및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담당자 ☎330-)로 문의바랍니다.

이 문서는 서대문구청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모집공고문〉

- 공고 시 통장 업무에 대한 설명과 업무 수행 시 소요시간에 대한 설명이 없음 ⇒ 위 공고문 참조
- 심사위원은 동장, 관련 팀장 3명, 통회장, 통부회장 등 총 6명이고 팀장과 통장이 모두 여성이어서 남1명 여5명이 면접관으로 참석함
- 평가지표 : 거주 기간, 이웃과의 유대 관계,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경력, 지원동기, 활동 계획, 기타 구정활동 참여 등
- 통장 업무를 잘 수행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
- 전반적으로 비슷한 점수이나 통장활동 계획과 구정 참여활동 등에서 민원인보다 여성이 근소한 차이로 점수를 높게 받아 통장직에 선발됨

2) 동사무소 방문 조사(2021. 4. 12. 월) : 동장 면담
- 두 지원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통장의 업무와 역할, 시간할애에 관한 질문을 함.
- 실제 통장의 업무진행은 수시로 카톡이나 문자로 회의하고 전달이 이루어지며 꽃심기, 경로잔치 등 주중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3) 통장 선발되신 분과 통화

① 지원 과정
- 거주하는 아파트 1층 로비에 붙은 공고문을 보고
- 전화로 문의한 후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접수

② 면접 시 질문의 내용
-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나?
-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알고 지원했나?
- 시간을 내어서 잘 할 수 있나?

[3] 판 단

가. 통장 모집 절차와 공고한 대로 두 사람 동일하게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접

수 받은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통장의 역할 등을 파악하고 있었겠지만 전화로 문의 시 상담하는 직원은 규정에 있는 대로만 대답하여 통장 업무의 전달체계나 업무진행 논의방식, 또 통장 역할 수행 시 어느 정도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말하지 않은 것은 민원상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면접관과 진행하는 직원 간에 서열이 있었기에 예의를 갖춘 것이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여졌다고 판단된다.

라. 두 지원자에 대한 질문의 내용이 비슷하고 잘 할 수 있는 의지를 파악하기 위한 면접의 과정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위에 쓴 바와 같이 통장의 역할이 꽤 많아 일일이 기억하여 설명하기 쉽지 않으므로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 전 역할을 미리 알려 주어 역할 수행을 미리 준비하게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가. 통장모집 공고 시 통장의 역할을 안내하거나 내용을 알 수 있는 온라인상 위치 안내,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 직장인의 경우 본인의 시간 구성을 잘 파악하고 두 역할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 후 지원할 수 있게 하기 바람

나. 기존 봉사자의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여 평균 시간 등을 제시할 수 있게 하고 접수 시 반드시 봉사에 요구되는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하기 바람.

[5] 부서 조치결과

통장 모집 공고 시 주요 활동사항을 기재하여 지원자가 통장의 업무 수행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1. 관공서 청소용품 납품업체 선정 관련 민원

[1] 민원개요

가. 민원신청 : 2021. 4. 8.

나. 민원내용

1) 민원인은 관공서 청소용품을 제안하고 납품하고자하는 신생업체임.
2) 2021. 2월 ~ 3월 청소용품 담당자와 공정한 검증과 경쟁을 위해 수차례 통화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함. 신생업체는 기존업체에 밀려 제안 및 견적조차 참여할 수 없는 현실에 허탈함.
3) 3. 18. 담당자에게 금년도 기존 ○○○○에서 납품들어 오는지, 견적이라도 받아 보라하니 담당자는 이번에도 그 업체와 계약해야 될 것 같다고 답변
4) 한 업체에서 여러 사업자로 돌아가면서 공급하는 방식이 이래서 되겠나 싶어 정확한 확인 요청

[2] 조사결과

가. 청소용품 구매 절차

1) 매년 청소용품(하계, 동계 구분) 구매예산(12백만 원 ~14백만 원)은 15백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대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 통상적으로 청소용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구청 방문하여 견적서 및 사양서 제출
3) 1주일 전에 품평회 일자 업체에 공지
4) 품평회 실시(환경미화원들이 제품의 특징 비교 후 직접 착용)
5) 안전성, 납품, 품질, 가격 등 우수한 업체 선정

나. 청소용품 구매 현황

연 도	하 계		동 계	
	납품업체	구매예산	납품업체	구매예산
2019	○○○○	12백만 원	○○○○	13백만 원
2020	○○○○	14백만 원	㈜△△ △△△△	13백만 원
2021	○○○○	13백만 원		

다. 2021 하계청소용품 구매 물품

1) 청소용품 : 작업화, 장화, 우의, 안전모헤드밴드, 다티스카프
2) 품평회 : 2021. 3. 19.(2개 업체 참여)

라. 민원인 주장(2021. 4. 15.)

1) 담당자에게 e-mail를 통해 청소용품 사양 등 견적서 제출
2) 품평회 전까지 수차에 걸쳐 담당자와 납품 관련하여 통화하였으나 번번이 거절
3) ○○○○은 자회사로 여러 개 업체를 만들어 각 기관의 청소용품 납품을 독점

마. 담당자 주장

1) 서울시 e-mail 용량 초과로 3. 15. 이전 메일 삭제하였고, 민원인의 수신 메일은 기억나지 아니함
2) 민원인과 3. 18. 통화 시 품평회 준비(3.19.) 등 시간을 고려하여 견적서 제출이 마감됨을 설명하지 못하였음.
3) 민원인이 수차에 걸쳐 통화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억나지 아니함
4) 이번 견적 제출한 2개 업체는 각각 별개 업체이고 이중 저렴한 가격을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임.

[3] 판 단

가. 이 건 청소용품 구매예산이 15백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대상이므로 관

련업체로부터 사전 견적 및 사양서를 제출받고, 품평회를 거쳐 우수업체와 수의계약하는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이 건 민원인과 담당자의 주장이 상이하나 담당부서에서는 기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매년 임의로 일정 시점에 견적서 및 사양서를 제출받고, 위 업체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품평회 일자를 위 업체에 공지하는 등 다른 신규업체에게는 품평회에 참여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특히, 위 민원인은 사전에 견적 등 자료를 제출하고, 문의를 하였는데도 품평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정 등을 안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라. 향후 청소용품 구매 시 신규업체들도 공정하게 품평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조치의견 : 권고

향후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용품 구매 시 다수의 업체가 품평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 발굴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5] 부서 조치결과

구 홈페이지에 구매계획공고, 청소용품 납품업체 대상 안내문 발송 등 다수업체 참여를 위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음.

품평회 평가인원을 기존10명 내외에서 20명 내외로 확대실시하고 납품업체 관계자가 참석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등 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해 품평회 방식을 개선하겠음. 또한, 납품을 위한 부적절한 행위 확인 시 해당업체는 품평회에서 배제하고 납품 횟수를 업체당 연속2회 이내로 제한하여 납품 독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

2. 주택 공사 소음, 분진 발생 조치요청

[1] 민원개요

가. 민원신청 : 2021. 10. 3.

나. 민원내용

서대문구 **로 ○○○-△△ 주택공사 현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고 또한 분진 발생하여 대기오염을 유발시킴으로 민원을 제기하여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시정요청

[2] 조사

가. 조사 일시 : 2021.10.20. 10:00

나. 조사자 : 시민감사옴부즈만 1명, 기후환경과 직원 1명, 감사담당관 직원 1명

다. 관련 규정

1)「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 제3항관련」법적소음기준 : 65db이상

→ 본 건축공사장 현장소음측정결과 (2021.10.20.) 62.1db 측정되었습니다.

2)「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및 별표14」: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등

→ 현재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건축물 내부공사, 건축물 주변 마당 등 정비중)로 분진은 발생되지 않은 상태임.

라. 조사 전 상황

1) 기후환경과 : 이전에 이 지역 일대 관련 전화민원이 있었으므로 현장 단속하고 민원 회신함.

2) 도시계획과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축공사 진행중, 현재(10월)는 외벽공사는 모두 완료되고 내부 공사 진행중이므

로 큰 소음은 없을 것

마. 민원인 주장

해당 위치에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휴일에도 공사를 진행하여 소음,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자주 제기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제대로 공사 감독하여 편안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바. 현장전경 및 소음 측정결과

1) 현장전경(2021.10.20.)

2)소음 측정결과표

 Quest SE-401 R.11C S/N: SE40110620 Session: S00751.SES TResponse = SLOW SPLmax = 75.9 dBA Leq = 62.1 dBA SPLmin = 44.5 dBA Runtime = 00:05:00 Date: 20-OCT-21 Time: 10:44:24 Location:	측정 일시: 2021.10.20. 10:44 소음 측정 결과: 62.1dB

[3] 판 단

가. 서대문구 **로 ○○○-△△ 주택공사 일대는 기존주택 지역으로 공사초기 건축기초굴착 및 건축골조 축조작업 시 소음분진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 조사당일(2021.10.20.)에는 주변마당 정리 작업. 건축물 내부 공사 중으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62.1db로 측정되었습니다.

나. 현장조사 시에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분진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가. 공사현장 소음, 분진에 대한 관련기준을 건축주 및 공사관련자에게 안내하고, 장비 사용 시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고 근로자 소음저감 교육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기 바람

나. 기후환경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추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하여 주시기 바람

[5] 부서 조치결과

저소음 장비를 적극 사용하고 근로자에게 소음저감 교육을 하도록 행정지도함.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살수 작업을 지시함. 또한 작업 전 주변 주민에게 알림·양해를 구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

1. 어린이집 근처 흡연자들 조치 요청

[1] 민원개요

가. 민원신청 : 2021. 9. 16.

나. 민원내용

1) ○○어린이집(서대문구 △△길 □□) 맞은편 골목입구 음식점 사장 2명이 어린이집 앞 반경 10m 내에서 몇 년째 흡연을 하고 있음

2)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어린이 집 앞이기도 하고 좁은 골목 입구 진입로에서 흡연하여 불편하니 흡연하지 못하도록 계도 조치 요망

[2] 조사

가.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나. 담당부서 조치사항(2021. 9.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건소 지역건강과 담당자가 현장에 출장하여 음식점 사장에게 위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이곳에서 흡연하여 안 된다고 주의 촉구하고 위 사실을 민원인에게 설명

다. 민원인 주장(2021. 9. 29.)

서대문구의 흡연 단속이후인 추석명절 기간에 해당 장소에서 흡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현재에도 야간에 이곳에서 계속 흡연이 이루어져 아침에 담배꽁초가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치 필요

[3] 판 단

가. 위 흡연 장소는 어린이집으로부터 10m이내인 장소로 금연구역에 해당됨.

나. 이 건 담당 부서의 흡연 단속 이후 추석연휴나 야간에 위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는 연휴기간이나 야간에 담당공무원의 흡연단속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민원인의 신고 등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위 장소에 금연구역을 표시하여 경각심을 유도하고, 야간흡연자로 추정되는 음식점 사장에게 민원 내용을 다시 알려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서대문구 보건소장은 위 장소에 금연구역 도로용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경각심을 유도하고 위 음식점 등에도 위 구역에서의 금연에 협조를 유도하시기 바람

[5] 부서 조치결과

해당 음식점에 방문, 사업주를 만나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흡연하지 않도록 조치함. 조치의견에 따라 해당 장소에 금연구역 스티커(도로용)를 5개 부착하고 홍보 실시함. 이후 수시 순찰하겠음.

제 4 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제1장 공사 • 77

1. 신촌역광장 재조성 공사(토목)
2. 도시재생 맞춤형 임대주택 신축공사(건축, 토목, 기계, 조경)
3. 가재울청소년센터 신축공사(건축)
4. 신촌 현대백화점 일대 하수암거 개량공사(1차)
5. 구립가좌제일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긴급
6. 바람산 이동편의시설 등 개선사업
7. 인왕산 둘레길 조성공사
8. 야호놀이터 조성사업

제2장 용역 • 116

1.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협상에의한계약 장기계속)(2차)
2. 모래내시장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
3. 신촌역광장 재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협상에의한계약)
4. 2021 GIS데이터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5.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용역(협상에의한계약 긴급)
6. DMC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7.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Q)
8.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설계 용역(PQ)

제3장 수의계약 • 145

1. 홍제3동 개미마을 일대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방악 연구용역
2. 서대문구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제작 용역
3. 코로나19 확산방지용 주민센터 및 보건소 물품구매(얼굴인식카메라)
4. 코로나19 및 미세먼지 대응 저소득층 마스크 구매

5.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마스크) 구매
6.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아동용 마스크 구매
7. CCTV회선 자가정보통신망 전환 정보통신장비 구매설치
8. 서대문 공공산후조리원 설계용역
9.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축 설계용역
10. 2020년 집중호우 피해지(홍제동 471등 2개소) 복구공사
11. 2020년 집중호우 피해지(현저동 1-150등 3개소) 복구공사
12. 실락어린이공원 석축 정비사업
13. 하천변 식생 및 조경시설 정비
14.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홍은동 산11-18 등 3개소]

제1장 공사

신촌역광장 재조성 공사(토목)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촌역광장 재조성 공사(토목) ● 사업기간 : 2021.1.1.~2021.9.14. ● 사업내용 - 신촌역광장 공간개선을 통하여 주민 휴게공간으로 전환 ● 위 치 : 대현동 121-1번지 일대 ● 사 업 비 : 1,299백만원 ● 현 공 정 : 85 %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1,941,578,71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1,299,368,760원 (낙찰율 : 87.308%) ● 계 약 일 : 2020-12-28 (착수일 : 2021-01-01)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감 605,000원 ● 준공정산 : 1,897,809,130원

본 공사는 신촌역 민자역사, 신촌박스퀘어, 신촌동주민센터 일원 복합화 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신촌역에서 이화여대정문에 이르는 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되도록 신촌역 광장을 재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1) 신촌 중심가로와 연계하여 신촌역광장 개선사업을 통하여 신촌민자역사, 신촌박스퀘어 및 신촌주민센터 일원 복원화 사업과 더불어 신촌역에서 이화여대 정문에 이르는 신촌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 지역경제력 확보, 청년계층 문화메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극대화,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하고자 함.

젊은 계층 유동인구가 많은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신촌역광장과 경의제4시설녹지간 지형적 단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동약자의 보행 편의를 개선시킬 수 있는 디자인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타당함.

2) 사업개요

①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121-2번지 일대

② 규모 : 4328m^2

③ 사업내용 : 신촌역광장 휴게소 조성 및 경의제4시설 녹지정비

④ 공사기간 : 2020.12.~2021.8.

⑤ 총사업비 : 2,274,644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도급비	관급비	기타	비고
토목공사 (조경 포함)	1,910,000	1,454,921	445,079	-	
전기공사	215,000	124,297	88,773	1,930	
통신공사	94,000	69,957	24,043	-	
폐기물처리비	55,644	55,644			

나. 계약의 적정성

1) 토목공사

①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서울특별시)

②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과 ㉡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독입찰만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2) 전기공사

① 입찰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② 입찰참가자격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③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이내

④ 공사비 : 금215,000천원(부가세포함)

3) 통신공사

① 입찰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② 입찰참가자격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③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이내

④ 공사비 : 금94,000천원(부가세포함)

4)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① 입찰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② 입찰참가자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③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이내

④ 용역비 : 금55,644천원(부가세포함)

다. 설계변경 내용

1) 조경분야 1차 설계변경 검토보고[푸른도시과-16145(2021.8.31.)]에 의거 현장 실정에 맞게 총 공사비 1,754,183천원(도급비 1,299,369천원, 관급비 454,814천원), 조경분야 도급비 274,067천원 + 관급비 38,641천원 =312,708천원을 발추저 지시에 따른 ①안산허브원 같은 명소화를 위한 식재 조감도 작성보고 ②나무보다 꽃 위주로 식재하여 화원 조성 ③안산허브원과 동일하게 식재하여 주민 휴식공간 조성 등에 따른 이설 및 철거공 증(+)8,829천원, 시설공 감(-)74,027천원, 포장공 감(-)4,317천원, 식재공 증(+)60,692천원, 도급자 관급자재 증(+)10,458천원으로 총 증액 11,995천원을 변경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경분야 공사비 변경 현황 단위 : 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계	312,708,438	326,337,693	증 13,629,255
도급비	274,067,545	265,243,763	감 8,823,785
관급자재비	38,640,890	61,096,930	증 22,453,040

2) 조경분야 2차 변경 검토보고[푸른도시과-16737(2021.9.8.)호]에 의거 식재공 증(+)19,046천원, 발주처 지시에 의거 설계변경함.

3) 토목분야 설계변경(정산)검토보고[도시재생과-7263(2019.9.13.)호] 실정보고 승인사항 12건, 당초 1,754,220천원 → 변경 1,897,809천원, 증(+)143,588천원(8.2%) 되었음.

[3] 종합판단

가. 본 사업은 복합공사(토목·전기·통신)로 「신촌역광장재조성사업」 공사발주계획[도시재생과-4706(2020.11.3.)] 방침서에 의거 적정하게 추진되었다

고 판단됨.

나. 신촌역 광장 재조성사업은 공사발주 계획[도시재생과-4706(2020.11.30.)에 의거 설계내역검토 및 공사감독이 분야별 임명되어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으로 시행되었음. 이는 적정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됨.

다. 신촌역 광장 재조성사업 중 조경시설공사는 다음과 같이 적정하게 하도급 계약하여 추진되었음. 이는 적정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됨.

하도급사	업종	도급금액	하도급금액	하도급 비율	하도급기간	비고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696,151,192	64,500,000	89.2%	2021년 3.16.~8.28.	

라. 조경분야는 발주처 지시에 의거, 토목분야는 현장 실정에 맞게 실정보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이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본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방침에 의거 분야별 설계검토 및 공사감독, 설계변경 정산함으로써 타과에 비교하여 모범적으로 적절하게 사업이 잘 추진되었음.

도시재생 맞춤형 임대주택 신축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재생 맞춤형 임대주택 신축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 ● 사업기간 : 2021.02.01.~2021.09.28. ● 사업내용 - 마을거점 공간 조성 및 맞춤형 임대주택 건립 ● 위 치 : 영천동 72번지 외 3필지 ● 사 업 비 : 2,166,537천원 ● 현 공 정 : 65%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1,694,768,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1,321,505,800원 (낙찰율 : 87.468%) ● 계 약 일 : 2021-01-26 (착수일 : 2021-02-01)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2회 ● 계약금액증감: 증82,148,100원 ● 준공정산 : 1,264,089,200원 (감139,564,700원)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구역 내 독립유공자 및 지역 활동가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지역주민과 교류 가능한 주민 공유 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특색 있는 도시재생 거점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적정성

1) 추진근거

-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고시(제2019-173호)
- 천연충현 도시재생 맞춤형 임대주택 건립공사 계획 (도시재생과-3442, 20.10.22.)

2) 추진경위

- 2019. 02~04 : 대상지 선정 및 구입
- 2019. 12월~2020. 4월 : 설계 공모 진행
- 2020. 4월 : 실시설계 용역착수
- 2020. 09. 14. : 실시설계 용역 준공

3) 사업개요

- 위치 : 서대문구 영천동72번지 외 4필지
- 주용도 : 다세대 주택
- 규모 : 지상5층(연면적 561.76㎡)
- 총 사업비 : ₩2,105,566천원

나. 입찰과 계약의 적정성

1) 긴급공고 :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이 필요하고 기존예산사용 계획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수시일이 촉박하여 긴급으로 공고하여 연내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고자함

2)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장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 부계약자는 각각 아래의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이며 주계약자 계약방식에 의한 2개 이내의 공동수급체(추정가격 구성비 82%:18%)를 구성하여야함

- 주계약자 : 건축공사업(종합), 토목건축공사업(종합)
- 부계약자 : 기계설비공사업(전문)

③ 1개의 법인이 종합과 전문, 2개의 건설면허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개의 구성원자격으로만 참여하여야한다.

④ 위와 같이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지역제한)으로 입찰하여 ㈜○○○○○○ + ㈜△△△△△가 낙찰됨

다. 설계변경의 적정성(2회)

1) 1차 설계변경

- 발주처 요청 및 설계오류에 의한 변경으로 낙찰차액을 이용함
- 변경금액 ₩82,148,100증가
- 변경요인 중 설계오류, 내역누락, 이유없는 변경(면처리→미장, 도장→미장 뿜질 등)이 24항목 중 10항목으로 40%정도임

2) 2차 설계변경

미사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미사용금액을 정산하여 감(-) ₩139,564,700으로 준공함

라. 감리 및 준공의 적정성

1) 감리

- 비상주 시공업체가 도급받은 공사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공하는지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원가관리, 환경보존 관리 등을 수행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최적의 품질로서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설계업체와 수의계약함
- 월별 회의록, 중간감리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변경보고서를 제출함.
- 평가의 시점이 준공과 겹쳐 일부 서류를 확인할 수 없음.

2) 준공

- 복층부의 계단과 난간은 설계도서(실시 및 준공도면)에는 있으나 내역에도 없고 시공도 하지 않음.
- 주민을 위한 음식물처리기를 1층에 설치하고 옥상까지 대형덕트를 설치하는 환기시설을 함.

[3] 종합판단

가. 도시재생구역 내 주민공유 공간을 포함한 독립유공자 및 지역활동가를 위한 특색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본 사업과 추진 과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입찰과 낙찰, 계약의 과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설계오류나 내역누락, 마감자재 등이 미리 검토되지 못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벽의 마감공사 전에 계단과 난간의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및 의견표명

가.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설계와 내역의 충분한 검토(필요시 감독부서와 협

력)를 하여 설계누락이나 오류 등이 최소화되게 하고 설계시의 의도가 바뀌지 않게 하기 바람 <의견표명>

나. 음식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할 시 탈취시설을 거치고 나가는지 확인하고 추후 냄새로 인한 민원이 없게 하기 바람 <권고>

다. 복층부의 계단과 난간의 시공을 제외한 이유와 시공계획을 제출하고 완료된 벽과 바닥이 훼손되지 않게 시공하기 바람 <권고>

라. 화장실, 주방, 공조 설비 등 많은 비용을 들여 최적의 맞춤형 임대시설을 갖추었고 용도가 바뀔 경우 시설투자의 낭비와 관리의 불리함이 있으므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기 바람 <권고>

가재울청소년센터 신축공사(건축)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재울청소년센터 신축공사(건축) ● 사업기간 : 2018. 10월 ~ 2022. 4월 ● 사업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신축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392 ● 사 업 비 : 12,045백만원 ● 현 공 정 : 28%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2,903,232,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2,522,145,000원 (낙찰율 : 87.49%) ● 계 약 일 : 2021-04-21 (착수일 : 2021-04-22)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 원 ● 준공정산 : - 원

부족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추진함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적정성

1)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항 제3호
-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조례 제5조(청소년 육성사업 등) 제1항 제2호
- 서대문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 추진계획(구청장방침, 2020.02.04.)

2) 추진경위

- 2018. 10. 청소년센터 건립계획 수립
- 2019. 06.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19. 07.~10. 건립심의위원회구성, 도시계획시설로 용도변경, 토지 매입
- 2020. 03.~06.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계약

- 2020. 10~ 2021. 02. 설계용역완료 및 건축허가 협의

3) 규모 : 지상1층 지하4층 연면적 1,623.17㎡

나. 계약의 적정성

1) 2021.3.24.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이 필요하고 기존예산사용 계획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수시일이 촉박하여 연내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고자 긴급으로 입찰공고함

2)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2장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부계약자는 각각 아래의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이며 주계약자 계약방식에 의한 2개 이내의 공동수급체(추정가격 구성비82%:18%)를 구성하여야함

주계약자 : 건축공사업(종합), 토목건축공사업(종합)

부계약자 : 기계설비공사업(전문)

- 1개의 법인이 종합과 전문, 2개의 건설면허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개의 구성원자격으로만 참여하여야한다.
- 위와 같이 제한(지역제한)경쟁입찰, 주계약자 공동도급, 총액입찰하고 적격심사하여 ㈜○○○○○○ + ㈜△△△△△가 낙찰됨

다. 도면 및 현장 조사

1) 도면조사

-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경관심의 결과 한전패드 이설, 특정실의 천정고 추가확보의 조건이 있으나 반영된 도면이나 표를 확인할 수 없음.
-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상이나 빗물처리에 대한 계획을 도면에서는 찾을 수 없음
- 지상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책꽂이는 계단에서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2) 현장조사

- 민원 등의 이유로 공사진행이 늦어져(현재공정 28%) 준공연기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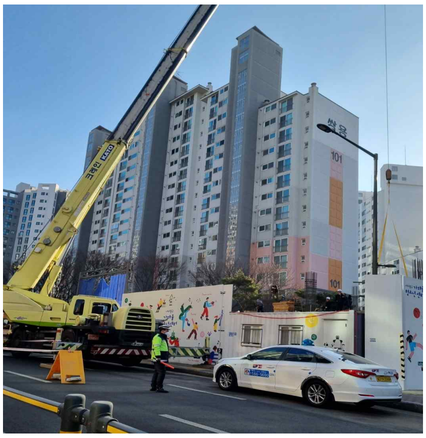	
<사진1> 공사현장	<사진2> 2층 골조공사

[3] 종합판단

가. 사업의 시행과 추진과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입찰의 과정과 계약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공사 진행 중이라 서울시의 경관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반영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빗물처리 설치 대책량이 반영된 계획도면이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계단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의 안전성와 편리성을 고려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및 의견표명

가. 서울시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건축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공확인 바람 〈권고〉

나. 빗물처리 대책에 따른 설비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공확인 바람 〈권고〉

다. 계단 부분의 책꽂이와 계단참 하부문 등의 편리성을 고려하기 바람〈의견표명〉

신촌 현대백화점 일대 하수암거 개량공사(1차)

[1] 사업개요

<table>
<tr><td rowspan="2">사
업
개
요</td><td rowspan="2">● 사 업 명 : 신촌 현대백화점 일대 하수암거 개량공사(장기계속-1차)
● 사업기간 : 2021. 4.9 ~ 2021.12.15
● 사업내용
- 하수암거 확대개량
□2.5×2.5m@2→□2.7×2.5m@2, L=107m
● 위 치 : 창천동 30-33 일대
● 사 업 비 : 1,911백만원
● 현 공 정 : 준 공</td><td>입찰
또는
계약
현황</td><td>● 발주금액 : 1,700,854,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1,208,158,000원
(낙찰율 : 87.736%)
● 계 약 일 : 2021-04-08
(착수일 : 2021-04-09)
● 발주방식 : 제한경쟁</td></tr>
<tr><td>계약
내용
변경
현황</td><td>●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1,910,897,830</td></tr>
</table>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1) 본 공사는 정밀안전진단결과 E등급인 하수암거 시설물 개량으로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임

2) 공사개요

① 공 사 명 : 신촌 현대백화점 일대 하수암거 개량공사-장기계속

② 공사위치 : 창천동 30-33번지 일대

③ 공사개요 : 하수암거 확대 개량 □2.5×2.5m@2→□2.7×2.5m@2, L=157.8m

④ 공사기간 : 2021.4.9.~2021.12.15.(금차분 : 2021.4.9.~2021.12.15.)

⑤ 공사금액

구 분	총공사비	도급비	관급비	이설비
총 차	3,753,982,000원	2,483,262,000원	558,370,000원	712,350,000원
금차분 (1차)	2,100,000,000원	1,397,264,000원	303,590,000원	399,146,000원

나. 계약의 적정성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2)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한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또는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와 부계약자는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단독입찰 불허)하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1개 법인(또는 개인)이 건설업(종합, 전문)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 구성원 자격으로만 참여가능 합니다

③ 분담비율 : 주계약자 69.4% + 부계약자 30.6%

- 주계약자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1,567,010,909	100
전문	토공사업	893,984,274	57
	포장공사업	56,091,794	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616,934,841	39

- 부계약자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전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690,500,000	100
종합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④ 하자보증기간 :

- 하수암거(준공검사일로부터 7년)
- 아스팔트포장(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콘크리트포장(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공종분리검증위원회 개최결과 주계약자, 부계약자 분리 결과 “이견 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라.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도면

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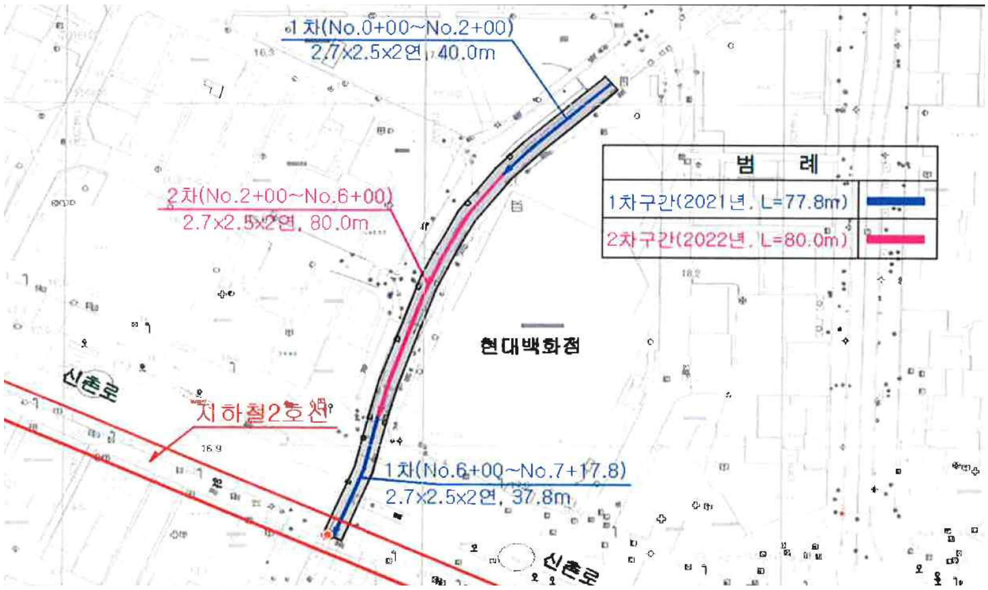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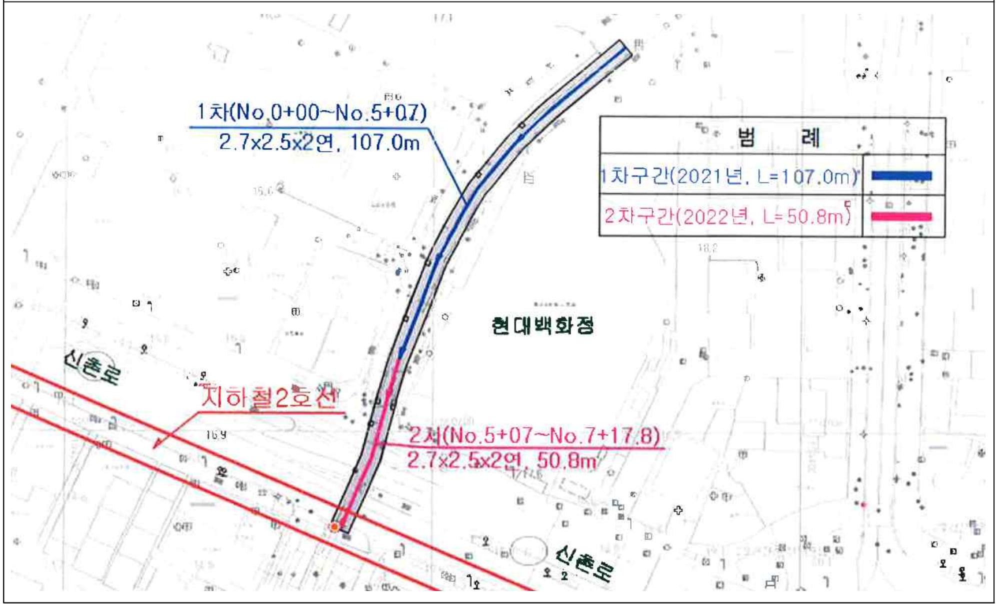

② 현장사진

라. 조사

1) 본 사업은 연세로 하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2019.05~07~2019.11.02., 과업수행사: ㈜△△△△△△△, ㈜□□□□□□)함.

2) 본 현장은 도시철도 2호선 신촌역~홍대입구간 지하본선 구조물 직상부 및 인접에서 시행으로 「철도도시안전법」 제45조에 의거 ①철도보도에

서의 행위신고서 ②도시철도구조물과의 상관관계도(위치도,평면도,단면도): 도시철도와 이격거리 표시 등, 현장굴착 규모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과 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최종 회신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10342(2021.6.15.)] 협의 조정이 필요해 당초 위치에서 변경 위치로 현재 시공함.

(당초 L=77.8m, 변경 L=107.0m 변경구간이 미복공구간으로 연장됨)

3) 상기와 같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지하가시설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현장 확인 등 절차 이행 기간이 약 4개월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와 회의 결과[2021.6.25. 서울교통공사, 서대문구청 감리단, 현장대리인] 지하철 선형상부의 위치 측량 실시하여 현재 가시설(H-pile+토류벽)공법은 시공이 불가하며 H-pile 설치 외 공법 변경 제시되는 등 당초 1차 구간 위치에서 공사실정보고승인[안전치수과-15055(2021.7.28.)] 시공구간 위치가 변경됨.

[3] 종합판단

가.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규모 하수암거 2.7×2.5×2연, 총연장 L=157.8m 중 1차구간인 L=77.8m(No.O2 No.2, L=40m, No6~No7+17.8 L=37.8m) 발주되어 시공 중 지하철 2호선 인접구간으로 도시철도법 제45조에 의거 연장 L=37m 구간이 포함되어 부득이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현재 시공된 상태를 현장조사 결과 시공은 대부분 적절하게 시공되었으나 하수암 내부의 가정관 등 연결부분이 사진과 같이 접속관로(PVDΦ100mm)하수암거 내부로 노출되어 우수 흐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장지적하고 하수암거 저촉되는 PVC관은 절단토록 현장조치하였음.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본 사업을 연세로 하수암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용역수행자는 지장물 등 사전조사협의 등을 거쳐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될 수 있어야 하나 사전 협의 미비로 공사 추진에 현안문제가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설계용역 시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공 중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구립가좌제일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긴급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립가좌제일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 사업기간 : 2021. 3. ~ 7. ● 사업내용 - 구립가좌제일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 외벽 단열재, 고효율 냉·난방기, 이중창호, 석면 제거, 보육실 등 리모델링 공사 ● 위 치 : 서대문구 수색로8길 46(북가좌동) ● 사 업 비 : 867,823,000원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1,053,829,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813,638,750원 (낙찰율 : 88.348%) ● 계 약 일 : 2021-02-25 (착수일 : 2021-03-02)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증 54,184,250원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적정성

시설노후화(36년)에 따른 시설내외부 보육환경이 취약하여 내부 천정 석면제거, 조리실 전체 리모델링, 옥상 방수 공사 및 시멘트 탈락현상 제거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경과

- 2020. 6~7월 : 2020년 어린이집 보수계획에 따라 건축사와 현장실사하여 옥상방수, 내외부 도장, 현관문교체 등의 내용을 파악하였으나 재확인 결과 천정석면, 조리실개선, 화장실 재배치 등이 요구되고 외부 난간 등을 포함한 운영자측의 전반적인 리모델링 요청
- 2020. 8~10월 : 리모델링 설계용역 시행
- 2020. 9. 11. :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정부예산관련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 한국형 뉴딜사업(그린뉴딜

사업)의 정부정책에도 동참하고 재원도 확보됨

- 2020. 09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신청
- 2020. 10 : 리모델링추진계획 수립 및 국비(223,589천원) 지원 선정
- 2021. 03 : 공사 착수
- 2021. 06. 29. : 준공

2) 시설 규모

- 면적 : 연면적 452.17㎡
- 지하1층, 지상3층

나. 계약과 설계변경의 적정성

1) 긴급공고와 입찰

- 어린이집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사업의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예산 조기집행 달성하기 위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자격 등록업체로서 서울시에 소재하고, 아래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
  ①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②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ㆍ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하고 낙찰된 업체를 적격심사하여 □□□□□□(주)과 계약함.

2) 설계변경

①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

- 오수관과 하수관의 분리 후 옥외맨홀 설치
- 기존건물의 기초 보강변경

ㆍ기존창 삭제

ㆍ마감재 두께로 인한 차량통행의 어려움으로 하부 자재변경

ㆍ개비온 벽체로 설계된 주방 앞벽을 통행로 확보상 방부목으로 변경

② 발주처요구에 따른 변경

- 옥상의 기존건축물대장과 상이한 부분을 일치
- 고효율 단열성능 확보를 위한 단열재 변경
- 3층 부분 보일러 및 에어컨 추가
- 옥상 텃밭, 자전거 보관소, 놀이터 난간

③ 설계오류에 의한 변경

- 비상계단이 놀이터 침범하여 위치변경(장애인 경사로 포함)
- 기존 내역서에 누락 및 과다설계부분 삭제

다. 시공과 준공의 적정성

1) 현장조사

건물전경

① 외부시공의 문제점

: 평면과 입면 등이 준공 시 도면과 다르거나 제대로 표시되지 않음 특히 외부의 마감변경 시 주무부서, 설계자 및 감리자 시공자, 어느 한 곳에서도 변경부의 입면, 단면, 상세 등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발생.

- 물홈통의 위치는 있으나 자재에 대한 사양이 없고 실제는 도면과 다른 위치에 시공되고, 각부의 통일성도 없으며, 우측면의 선홈통은 수평으로 시공된 부분이 길고 90도로 꺾여서도 수평으로 연결되는 등 차후 흙먼지로 막히거나 얼어서 배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함 (사진1)

또한 1층에서 우수처리 계획이 제대로 안됨(사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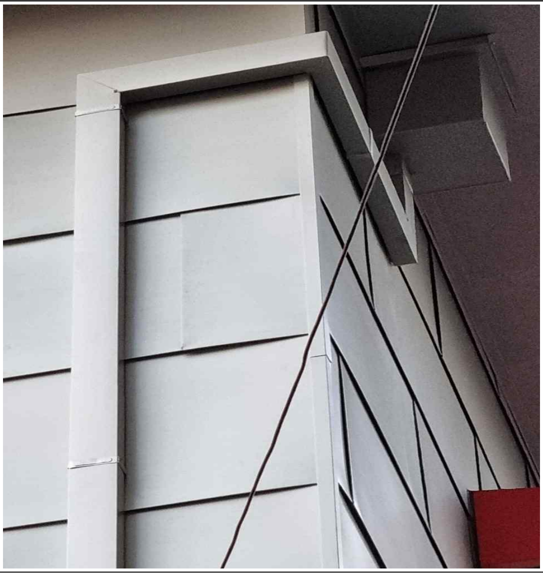	
<사진1> 물홈통의 잘못된 시공	<사진2> 1층의 선홈통 하부

- 배면의 외벽 디테일 변경 시 정화조 맨홀을 덮고 시공함

<사진3> 벽체와 정화조 뚜껑

- 옥상의 방수 상태가 기초면의 품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마감면에 굴곡이 심하고 불안정한 균열부가 보이며 마감두께, 마감상태 등도 매우 부실함

<사진4-1> 우레탄 마감상태	<사진4-2> 우레탄의 마감상태

- 옥상의 전선들이 비상탈출 계단을 가로지르고 있어 비상시에 걸려서 계단으로 굴러떨어질 위험과 미관상의 문제있음.

<사진5> 옥상의 전선들

- 지하 주방 출입구의 화단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조경석도 제대로 놓지 않아 흘러내린 흙이 방부목을 덮고 있어 방부목과 철구조재의 조기부식이 우려됨

<사진6> 주방 야외데크

- 내부 계단의 벽은 균열이 많고 지하계단부는 방수 하자처리후 도장상태가 매우불량함(사진7-1, 7-2)

<사진7-1> 계단부의 균열	<사진7-2> 도장불량

- 난간의 철물이 이탈된 부분이 많고 손이 베일 위험있음

<사진8- 난간상황>

- 내부 미닫이문의 로라, 하부 가이드, 손잡이 등의 탈락 문제

<사진9> 미닫이문의 철물들

- 주방에 전기용량 및 콘세트 수량, 환기 설비의 과다설계 문제가 있음

[3] 종합판단

가. 사업의 시행과 추진과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긴급공고와 입찰, 계약의 과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는 기본적으로 현장조건의 부합여부,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다른 공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잘 검토하여 설계와 시공 감리를 하여야 하며, 또 감리는 착수단계에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설계 시 우수처리에 대한 기본 계획이 누락되고 변경 시에도 추가되지 않았으며 현황과 상이한 준공도면을 납품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시공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외벽이 정화조 맨홀의 일부 덮었으며, 노출 우레탄 방수와 주방 전기공사, 환기에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시공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준공 시 부실시공을 파악하지 못한 채 준공조서에 확인하고 준공 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가. 현황과 맞는 도면을 납품받기 바람.

나. 부실 시공된 채 준공 필한 내용을 파악하고 재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기 바람.

다. 어린이집과 일정을 협의하여 재시공하고 여러 하자에 대해 보수하기 바람.

바람산 이동편의시설 등 개선사업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바람산 이동편의시설 등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1. 5. 12. ~ 11. 11. ● 사업내용 - 엘리베이터 및 보행교 설치 - 문화광장 조성, 수목식재 등 ● 위 치 : 창천동 4-55일대 ● 사 업 비 : 1,950백만원 ● 현 공 정 : 준 공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1,708,952,33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1,020,664,000원 (낙찰율 : 87.399%) ● 계 약 일 : 2021-05-10 (착수일 : 2021-05-12)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2회 ● 계약금액 증감 : 원 ● 준공정산 : 원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1) 본 사업은 언덕 위에 있는 물리적 접근을 상쇄할 수 있는 이동편의시설 설치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방문하는 사시사철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또한 지리적 콤플렉스 해소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2) 바람산 일대 이동 편익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적절히 추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계약의 적정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 입찰대상)에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의 경우(본 사업은 12.2억 원) 입찰참가자격을 관할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으로 적절하게 시행되었습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호시장 진출허용으로 주계약자는 종합건설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또는 전문건설 중 토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며, 부계약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종 중 조경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단, 부계약자 중 조경공사업(종합) 면허 보유자는 조경식재 부분만 시공하는 조건으로 입찰가능함.)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본 사업은 보행교 특정기술(공법)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서울시 조례 제7138호(2019.11.17.)]에 의거 특정공법 선정된 업체로 시공토록 선정되었습니다.

1) 심사대상업체

대상공법	특정기술공법	업체명	권리사항(특허)	비고
거더	AR 강관거더	㈜△△△△	특허 제#호	
	HY-P 합성거더	㈜○○○○○○○	특허 제◇호	
	LSP 강판합성거더	㈜□□□□□	특허 제▽호	
	TCB 합성거더	㈜＊＊＊＊＊＊	특허 제◉호	
	내부보강형 강판거더	☆☆☆☆☆☆	특허 제♤호	

2) 심사(평가)점수

연번	특정기술(공법)	업체명	평가점수 (기술+가격+가산점)	순위
공법1	AR 강판거더	㈜△△△△	343	4
공법2	HY-P 합성거더	㈜○○○○○○○	352	2
공법3	LSP 강판합성거더	㈜□□□□□	345	3
공법4	TCB 합성거더	㈜＊＊＊＊＊＊	368	1
공법5	내부보강형 강판거더	☆☆☆☆☆☆	340	5

3) 심사결과 종합점수(TCB 합성거더 공법)(368점) 선정됨

라. 조사

1) 본 사업은 바람산 보행교 설치공사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의거 5대 참가업체 중 평가점수 최고점 368점(1위)가 선정되었다. (관급자설치 371,109천원)

2) 본 사업의 도급자는 입찰결과 ◎◎◎◎◎◎주식회사 (계약금액: 1,020,664,000원, 계약일자: 2021.5.10., 설계금액: 1,168,489,430원, 낙찰률 87.399%)와 계약되었습니다.

마. 설계변경

본 공사는 설계변경을 2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수량 증감 정산 및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 중 강도로교 공사(거더) 수량 집과 누락으로 설계자인 ㈜★★로부터 설계수량누락 및 보완 공문[★★조경 21-▼호(2021.6.3.)]을 확인받아 설계변경 하였음.(강교설계변경금액 85,552천원)

[3] 종합판단

가. 본 공사는 특정공법 심사를 거쳐 관급자설치 관급으로 선정된 ㈜◆◆◆◆산업의 공장에서 보행교(B=3.2m, L=15.37m, ∅609×12t) 제작하여 현장설치되는 보행교 공사로써 강도로교 시방서에 의거 품질관리(용접검사, 도장검사 등)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본 공사 시행중인 보행 육교의 기둥이 높이가 (∅609×12t) L=15.37m으로 구조계산서에는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나, 강구조물의 재료의 특성상 상부보행교의 흔들림에 의한 불안전한 심리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다. 본 공사는 비전문부서인 푸른도시과에서 강도로교를 시공한 것으로 시공단계별 검출 등이 실시되지 않으므로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었음.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가. 본 사업의 시행부서는 푸른도시과이고 보행교(강구조물) 제작설치 분야는 토목분야로 서로 다르므로 보행교 시공자로 하여금 품질관리 결과(열접 목두께, 도장두께, MT자분탐사검사 등)를 공사시방서에 맞게 제출하여 준공 전 확인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나. 보행교 기둥 (∅609×12t) L=15.37m 구조적 안정은 확보되어 있으나 강제의 재료 특성상 흔들림으로 노약자 이용 시 불안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장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함.

다. 본 공사는 비전문직인 푸른도시과에서 강도로교를 설계시공함으로써 현장 감독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므로 향후에는 강도교 건설 분야(토목과)에서 감독을 임명하여 시행하기 바람.

인왕산 둘레길 조성공사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왕산 둘레길 조성공사 ● 사업기간 : 2020.12.28. ~ 2021.06.07. ● 사업내용 - 목계단 및 안전난간 설치, 수목식재 등 ● 위 치 : 홍제동 산 1-1 ● 사 업 비 : 295,461,100원 ● 현 공 정 : 2021.06.07.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394,936,2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268,911,800원 (낙찰율 : 87.792%) ● 계 약 일 : 2020-12-28 (착수일 : 2020-12-28)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증 26,549,300 원 ● 준공정산 : 291,170,000원

인왕산 등산로를 활용, 통일된 안내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왕산을 순환하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이용편의 제고 및 산림환경을 보전하고자 본 용역이 진행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청렴감시는 (1) 사업의 타당성, (2)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3) 계약변경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인왕산은 접근성이 뛰어나 도시민의 이용도가 높으며 등산로, 자락길 등 다양한 숲길이 운영 중이나, 2개의 관리청(서대문구, 종로구)에 걸쳐 있어 인왕산의 연속적인 스토리텔링이 어렵고 안내판 등 정부수준도 제각각이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조성 기준, 방향 정립 후 2개 관리청에 위치한 인왕산을 통일성 있게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서대문구가 담당하는 1.6km 부분의 인왕산 둘레길 안내체계 구축, 샛길 폐쇄, 노면 정비 등을 추진하는 것인 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나.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 중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의거 산림사업에 대하여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 관리) 또는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6. 7. 29. 이전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였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여야 한다.

본 공사는 적격 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 관리)이고, 전자입찰로 진행하여 ☆☆☆☆☆☆☆☆☆☆ 주식회사가 종합평점 95.8점을 획득하여 심사대상자로 결정되어 전자계약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계약변경의 적정성(2회)

1) 2021. 4. 5. 동절기(12월~2월) 하부기초가 되는 콘크리트 양생 및 지반 동결로 공사가 어려워 공사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위해 공사기한을 2021. 4. 6.에서 2021. 6. 5.로 변경하였다.

2) 2021. 5. 27. 현장여건, 민원사항에 따라 식재공(종류 변경), 시설공(쉼터 케트 및 목교 추가 및 변경, 목계단 및 축대목 추가 설치, 측구덮개 설

치), 부대공(운반비 재정산) 변경으로 당초 도급비가 268,911,800원에서 26,549,300원(9.87%)가 증가한 295,461,100원으로 증가하였다. 누적금액으로 보았을 때는 27,866,000원 증액, 993,000원 감액, 관급자재 24,631,000원 감액으로, 관급자재 변경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최초 계약금액 대비 10.73%(28,859,000원)가 변경되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샛길방지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최초 계획했던 국수나무가 아닌 화살나무를 식재하면서 계약금액을 1,300만원 가량 증가하였고, 현장 여건에 따라 쉼터 데크 및 목교, 목계단 및 축대의 정비 수량을 증가하면서 계약금액을 약 800만원 증가하였다. 또한 등산로와 인접한 배수로 상부가 덮개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덮개 설치를 하면서 약 550만원 가량 증가하였다. 한편, 관급자재 중 안내판 부분은 수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내판 숫자를 대폭 축소하여 2,500만원 가량 감액하였다.

[3] 종합판단

가. 이 사건 사업은 2개의 관리청에 거친 인왕산 등산로에 대하여, 통일된 안내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왕산을 순환하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이용편의 제고 및 산림환경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바, 이 사건 용역의 진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최초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해당 계약의 낙찰 기준인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적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발생할 수 없다.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 주식회사는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자로, 종합평점이 최소 기준을 상회하는 바, 계약업체도 적합하게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차례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1차 변경은 동절기에

하부기초가 되는 콘크리트 양생 및 지반 동결로 공사가 어려워 공사기간을 약 2달 추가 연장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대문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누적적으로 10%이상 가감된 경우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누적금액이 관급자재 변경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최초 계약금액 대비 10.73%(28,859,000원)이 변경된 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어야 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샛길방지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최초 계획했던 국수나무가 아닌 화살나무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량이 최초 계획하였던 1,050주가 아닌 1,960주로 증가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이 안내판 등을 포함하여 인왕산 둘레길의 통일된 체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안내판 설치와 관련한 관급자재 비용을 대폭 감소한 바, 해당 부분을 감액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조치의견 : 감사요구 및 의견표명

가. 설계변경 누적금액이 10%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 및 식재의 종류와 수량이 변경되었는데, 샛길방지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식재의 종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식재를 최초 계획하였던 주수보다 2배 가량 증가한 이유를 감사하기 바람 <감사요구>

나. 계약변경 시 관급자재 비용을 줄이고 도급자재 비용이 늘어났는데, 이 사건 공사에서 관급자재로 공급받으려던 안내판 등은 필요한 비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관급자재가 가능한 경우 관급자재를 사용하기 바람 <의견표명>

야호놀이터 조성사업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야호놀이터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0. 9. 1. ~ 11. 27. ● 사업내용 - 신기한놀이터 2호(야호놀이터) 조성 ●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산 41-40 일대 ● 사 업 비 : 1,037백만원 ※ 계약 : 667,192천원(도급 528,720천원 / 관급 138,472천원 변경 : 755,935천원(도급 581,306천원 / 관급 174,629천원 준공 : 755,726천원(도급 581,097천원 / 관급 174,629천원 ● 현 공 정 : 100% ※ 준공일 : 2020. 11. 27.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737,664,33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581,314,800원 (낙찰율 : 87.217%) ● 계 약 일 : 2020-08-28 (착수일 : 2020-09-01)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2회 ● 계약금액 증감 : 52,585,900원 ● 준공정산 : 581,097,000원

무단경작 및 쓰레기 적치로 방치되어 있는 경관이 불량한 공원부지를 어린이들의 도전과 모험놀이 공간 및 주민 힐링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적정성

1) 추진 경위

- 2017. 1. ~ 2019. 11. 신기한 놀이터 1호 조성
- 2019. 2. ~ 2019. 11. 지적측량, 보상심의
- 2019. 10. 사업추진계획수립
- 2019. 11. ~ 2020. 2. 기본구상 및 도시관리용역
- 2019. 12. ~ 2020. 1. 워킹그룹 위원선정 및 심사, 총괄기획가 운영
- 2020. 4. ~ 2020. 6. 실시설계용역, 주민공유회
- 2020. 4. 공사 추진

2) 추진 개요

- 대상지 : 홍제동 산41-30등 3필지, 신기한 놀이터 1호 옆
- 사업기간 : 2020. 1. ~ 2020. 9.

- 규모 : 8,596㎡
- 사업비 : 1,037백만원 (전액 특별교부세+시보조금)
- 사업내용 : 무단경작지 식생복원,
  폐기물 처리
  자연물 놀이공간 및 도전과 모험의 놀이공간 조성
  숲치유 힐링 휴게공간 및 유아 숲체험장 조성

나. 입찰과 계약의 적정성

1) 긴급공고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과 1호 놀이터와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하여 긴급으로 진행

2) 특정기술제품(스페이스네트) 심사위원회가 7월 25일 개최되고 △△△△△△가 선정됨

3) 입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업체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필한 업체로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적격심사하여 ㈜☆☆☆☆으로 낙찰됨

4) 계약

- 공사액 ₩528,720,100
- 공사기간 2020. 09. 01. ~ 2020. 10. 31.

5) 내역서상의 불합리한 단가

① 모험 슬라이드 내역서 단가는 ₩39,600,000(세금포함, 약16m)이며 ₩34,748,000원으로 정산됨

<사진1>모험슬라이드 시공현황

<사진2> 11m 모험슬라이드 조달가

길이가 50% 늘어나는 걸 감안하더라도 조합이 아닌 원통형미끄럼틀만의 예산가가 너무 높게 책정됨

다. 설계 변경과 준공의 적정성

1) 준공기한 연기

- 연기 일자 : 2020. 10. 31. → 2020. 11. 27.
- 연기 사유 : 장마, 태풍 등 기상상황으로 인한 착공지연

배수로 증가, 공사구간 내 암반 및 매립폐기물 발생
시설물 설치 후 안전검사 이행 등에 따른 공기확보

2) 설계변경1차 (2020. 11. 5.)

① 공사변경에 따른 금액변경

- 증 ₩52,585,900
- 변경 사유 :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의 변경
  민원발생에 따른 변경
  총괄기획가 및 협치워킹그룹의 의견반영
- 주요 금액증가 내역 : 우수로 보강 160m → 235m
  슬라이드 1개 추가
  사면보호공종으로 조경석 쌓기함
- 추가된 슬라이드(길이3.6m 폭2.52m) 금액 ₩27,500,000(세금포함)

	 뚝 미끄럼틀, FUN-PEOP03 와이드 ₩8,250,000
<사진3> 슬라이드 시공현황	<사진4> 동일길이 가로1775의 슬라이드 조달가

- 추가된 슬라이드의 폭(2.52m)이 비교 수록된 슬라이드의 폭(1.77m)보다 75cm 더 크나 비교된 슬라이드를 2개 설치(폭3.54m로 설치된 것보다 1m 더 큼)한 가격(₩16,500,000) 보다 ₩11,000,000원이나 높음
- 공사비의 증가는 10%이내이지만 아래 표와 같이 변경공종의 변경내역금액의 합계가 ₩77,886,095원으로 계약금액의 10%가 넘으므로 설계변경 심의를 하여야하나 심의 없이 진행

철거공사	- ₩ 129,426
시설물공사	₩ 38,402,678
포장공사	₩ 4,311,870
식재공사	- ₩ 21,518,306
우배수공사	₩ 13,523,815
합	₩ 77,886,095

<표1-내역서상의 증감액>

3) 설계변경2차 : 금액변경

- 증 ₩ 8,610
- 변경 사유 : 현장 여건으로 인한 재배치 등에 따른 물량변동 등
  성토와 우기 시 침수 등에 의한 안전성 반영
  1호 놀이터와 연계 반영

4) 준공

- 공사 완료, 준공도면, 사진, 기타 성과품이 잘 제출되고 준공필함

라. 놀이기구의 안전성

1) 모험 슬라이드의 경사가 크고 속도가 있어 출구 쪽의 충돌이 우려됨
2) 스페이스네트 하부쪽의 로프 오픈간격이 커서 보호자 동반안내 및 연령이나 신체치수의 제한이 필요해 보이며 현장조사 중 놀이터 이용 중이던 아동에게서 실제 사고가 있었고 위험해서 가지 않는다고 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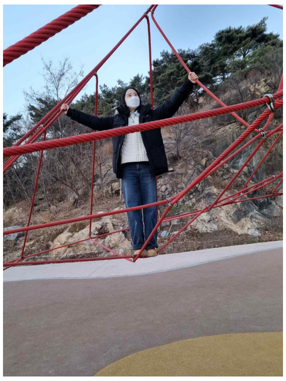

[3] 종합판단

가. 공원부지의 무단사용과 쓰레기 적치를 해결하고 주민에게 놀이와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이 사업의 시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나. 재정의 조기집행과 쓰레기 악취 등의 피해를 고려한 긴급시행은 적절하고 계약의 모든 과정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예산내역서 작성 시 시설물 단가의 기본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1차 설계변경 시 변경공종의 변경금액의 합이 총금액의 10%이상으로 설계변경심의 대상이나 심의 없이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 추가 설치된 슬라이드의 가격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고 시중 조달청 단가보다 과하게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바. 안전검사를 거쳤지만 일부 시설은 이용 시 위험요소를 안고 있고 이에 대한 안내표시도 없이 주민(특히 보호자 없이 오는 어린이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감사요구 및 권고

가. 예상내역서의 단가를 물가자료에 의거하여 현실적으로 책정하고 과도한 지출을 지양하기 바람 <권고>

나. 설계변경심의를 필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기 바람 <감사요구>

다. 슬라이드 추가 시 내역의 제출경위를 파악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차액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감사요구>

라. 놀이기구의 사용에 대한 연령 제한이나 위험에 대한 주의 안내를 확실하게 하고 스페이스네트는 추락사고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제2장 용역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협상에의한계약 장기계속)(2차)

[1] 사업개요

<table>
<tr>
<td rowspan="2">사업개요</td>
<td rowspan="2">● 사 업 명 :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장기계속-2차)
● 사업기간 : 2020. 09. 01. ~ 06. 30.
● 사업내용
-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 위 치 : 천연동, 충현동 일대
● 사 업 비 : 295,000,000원
● 현 공 정 : 100% (2021.06.30. 준공)</td>
<td>입찰 또는 계약 현황</td>
<td>● 발주금액 : 295,00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295,000,000원
(낙찰율 : 99.279%)
● 계 약 일 : 2020-08-31
(착수일 : 2020-09-01)
● 발주방식 : 제한경쟁</td>
</tr>
<tr>
<td>계약 내용 변경 현황</td>
<td>●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원
● 준공정산 : 원</td>
</tr>
</table>

천연동·충현동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미 발주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용역(장기계속) 1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차계약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장기계속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2) 계약내용

차수	용 역 기 간	설계금액	재원
1차	2020.1.2. ~ 2020.8.31.(8개월)	185백만원	2019년 본예산
2차	2020.9.1. ~ 2021.6.30.(10개월)	295백만원	2020년 본예산
3차	2021.7.1. ~ 2022.12.31.(18개월)	485백만원	2021년 본예산
총계	2020.1.2. ~ 2022.12.31.(36개월)	965백만원	

나. 과업의 타당성

1) 과업 목적

이 건 용역은 이미 수립된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지원 용역으로 현장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2) 과업의 범위

①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충현동 일대

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294,590㎡, 뉴딜사업구역 : 192,500㎡

3) 과업기간 : 2020. 9. 1 ~ 2021. 6. 30.

4) 과업내용 ;

①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센터조직 구성과 역할
- 센터 운영을 위한 연차별 분기별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

② 단위사업 실행·타 단위사업 지원

- 용역 관련 단위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사업별 추진체계 수립 및 실적 보고
- 용역 관련 단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방안 제시
-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원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도시재생 기반 구축사업
·노후주택 개선 지원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사업
·걷기 좋은 생활중심가로 조성사업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
·골목상권 활력사업	·마을콘텐츠 사업

③ 도시재생 체감도 증진을 위한 주민 지원

- 주민협의체 지원
- 사업의 지역 관리 역량 확보 및 공동체 활성화
-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비사업 추진 지원

④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업무 지원
- 지역 현황의 변화사항을 반영한 실행성 검토 및 대안 마련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등 업무 지원

⑤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 확보 지원
- 도시재생백서 작성
- 사업 종료이후 지속가능한 마을관리중장기계획수립
-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업의 발굴 및 지원

다. 전년도 청렴감시 주요 지적내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1) 과업지시서에 지정된 인원보다 실제에는 적게 운영한 데 대하여 정산 조치하기 바람
2)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연차별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바람
- 전체 사업공정표, 사업별공정표, 현황표 작성 제출
3) 마을백서의 결과물과 차수별 결과물을 제출 받지 않고 준공 처리하였으므로 확인 조치하기 바람

[3] 종합판단

가. 이 건 장기계속용역이고 전년도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하였던 사항임으로 사업의 타당성, 계약의 적정성 등은 추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단위사업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을 추진하면서
1)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 접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당초 과업지시 내용에 맞게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전년도 감시평가 주요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한 바
1) 과업지시서에 지정된 인원보다 실제 투입인원이 차이(0.4명)에 대하여는 3차분 계약 시 정산하였고, 2・3차분에 대하여는 과업지시서에 맞게 인원 투입하고

2)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연차별 운영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었고

3) 2차 용역결과물[서대문구 천연충현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 보고서(3-2차)]을 제출 받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모래내시장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모래내시장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 ● 사업기간 : '21.2.15. ~ 12.15. ● 사업내용 - 골목길 기반시설 개선, 공동체 형성 ● 위 치 : 남가좌동 수색로2길 일대 ● 사 업 비 : 176,000,000원 ● 현 공 정 : 100%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180,00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176,000,000원 (낙찰율 : 97.777%) ● 계 약 일 : 2021-02-10 (착수일 : 2021-02-15) ● 발주방식 : 일반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0회 ● 계약금액 증감 : 0원 ● 준공정산 : 0원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추진계획」과 「2020년 골목길재생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 및 골목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용역 시행 계획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개요

1) 용역의 필요성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95%에 이르는 노후화가 가속된 지역이고, 골목길 내 불법주차, 쓰레기 등으로 방문객 및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CCTV, 보안 등 부족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신규 유입된 지역주민들로부터 단절되는 등 시장기능이 쇠퇴하고 있어 이를 타개할 방안 모색 필요

2) 추진방향

① 스마트 안전 골목길재생

- 골목길 안전성 개선을 위한 스마트안심거리 조성

- 소방시설 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

② 특색있는 상권골목 만들기

- 주민공동체 구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③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유치

3) 과업범위

① 공간적 범위 : 수색로2길 일대(연장 575m, 폭원 2~10m, 면적 14,000m^2)

② 내용적 범위: 지역현황 조사・분석 및 골목길 지도 작성,
골목길 재생사업 기본구상(마스터플랜) 수립,
골목길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
모래내시장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계획 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 포함)

나.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낙찰자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후 가격 협상)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3)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과업내용 이해도, 과업수행 추진체계, 과업 수행계획, 골목길 공동체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의 적절성)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건축 2명, 도시계획 2명, 공동체・마을 2명

2) 위원회 개최(2021. 1. 22.) : 제안서 접수[총 2개업체 : ㈜○○, ㈜□□] 및 평가 결과

- 우선 협상대상자로 ㈜○○으로 결정하고 협상을 통해 위 업체와 계약체결

[3] 종합판단

가. 용역의 타당성

이 건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건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 평가에 높은 점수(90점)를 부여한 것은 위 골목길 재생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용역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분야)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위 업체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신촌역광장 재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협상에의한계약)

[1] 사업개요

<table>
<tr><td rowspan="2">사
업
개
요</td><td rowspan="2">● 사 업 명 : 신촌역광장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사업기간 : 2020. 8. 21. ~ 11. 20.
● 사업내용
- 광장 및 공원재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 위 치 : 대현동 121-2일대
● 사 업 비 : 58,102천원
● 현 공 정 : 100 % 준공)</td><td>입찰
또는
계약
현황</td><td>● 발주금액 : 58,102,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58,102,000원
(낙찰율 : 100%)
● 계 약 일 : 2020-08-21
(착수일 : 2020-08-24)
● 발주방식 : 제한경쟁</td></tr>
<tr><td>계약
내용
변경
현황</td><td>● 설계변경 횟수 :
● 계약금액 증감 : 원
● 준공정산 : 58,102,000원</td></tr>
</table>

본 사업은 신촌중심상가와 연계하여 신촌역광장의 개선사업을 통해 신촌밀리오레, 신촌역 박스퀘어 및 신촌복합주민센터 일원 복합화 사업과 더불어 신촌역에서 이화여대 정문에 이르는 신촌문화거리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임

○ 사업개요

1) 층별 : 광장재조성(지상), 면적 4.328m^2

2) 주요시설물 : 광장평탄화, 녹지공간조성

3) 사업비 : 1,117백만원 (설계비 65백만원, 공사비 997백만원, 기타 55백만원)

4) 위치 : 서대문구 대현동 121-2번지 일대(신촌기차역 광장 일대)

5)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① 다음 항목 ㉠ 또는 모두를 충족시키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의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의 신고를 필한 기술사사무소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을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계약을 허용(분담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①-㉠의 업체로 하며, 대표사의 분담비율이 가장 높아야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④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3)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 평가 위원 7인(예비평가위원 21인)

분야별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평가위원 (예비평가위원)	1명 (3명)	2명 (6명)	2명 (6명)	2명 (6명)

4) 제안서 설명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당일 추첨 결과에 의함

5) 평가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자격평가(10점), 총100점

나. 평가결과

구분		☆☆☆☆☆☆☆사무소	㈜○○○○○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20)	18.5	20
	정성적평가(70)	68.4	57.6
	소계(90)	86.9	77.6
입찰가격평가	평점(10)	9.13	10
	입찰가격	56,980,000	52,000,000
종합평점		96.03	87.60
순위		1 (우선협상대상자)	2

다.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요청[도시재생과-1439(2020.8.18.)]호

용역명	대상업체	계약금액	착수일
신촌역광장 재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무소	58,102,000원	2020.8.24.

[3] 종합판단

가. 본 용역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시행계획[도시재생과-9206호(2019.11.14.)의거 신촌지역의 경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신촌광장재구조화」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주요과업내용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입찰참가자격,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안) 및 향후 공사 시행까지 진행되었음

나. 본 사업은 가격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협상 적격자 통보 및 계약 체결 등 계약 과정이 적절하게 추진되었음.

다. 본 용역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계획에 의거 전문가 (내부 2명: 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과장, 외부 4명: 건축분야, 건축지역계획분야, 문화계획분야, 콘텐츠 기획 분야)로 구성되어 착수보고, 중간보고 등 7차 자문회의 결과 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을 인지하여 접근함.

① 구민들을 위한 쉼터 제공

② 토끼굴과 단절된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광장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연계에 대한 방안

- 주차장 없는 공간으로 재계획

① 주차램프로 인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며

② 도서관이나 생활문화센터에 얽매이지 말고 시설이 없더라도 주차장 공간으로 재기획하기 바람

라. 본 용역은 사전에 수행계획 방침으로 단계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되었으며 특히 자문위원회 사전 운영으로 용역이 진행되었음.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2021년 GIS데이터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GIS데이터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1. 2. 1. ~ 2021. 12. 31. ● 사업내용 -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업데이트 및 점검 - 시스템 최신버전으로의 갱신·유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문제해결 ● 위 치 : ● 사 업 비 : 66,366천원 ● 현 공 정 : 45 % (6.30.기준)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66,366,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58,295,000원 (낙찰율 : 88.092%) ● 계 약 일 : 2021-01-28 (착수일 : 2021-02-01) ● 발주방식 : 제한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 계약금액 증감 : 원 ● 준공정산 : 원

서대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GIS데이터분석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 용역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제한경쟁계약(조달청 G2B를 통한 전자계약)

2) 입찰자격

① 입찰참가자격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

②「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③ 과업 수행사는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개발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및 통신사 유동인구데이터의 모바일 빅데이터 공급확약서 제출

- (주)☆☆☆☆☆☆☆(GIS데이터분석시스템 개발사)
- (주)○○텔레콤(통신사유동인구데이터)

④ 지방계약법 제23조에 의거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하였다.

나. 용역의 타당성

1) 지속적이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 분석 및 제공

2) GIS분석시스템의 활용도 향상

3) 데이터 분석 목록 : 총 11건

① 환경(1) : 주요 오염원별 미세먼지 발생량 분석

② 문화, 관광, 경제(5) : 전통시장 내 유동인구 분석, 지역 상권 내 블록별 점포밀도 분석,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상권매출 변화, 관내행정구역별 내국인 소비금액 증감 분석, 관내 주요관광지 방문객 유형 분석

③ 방재, 치안(3) : 산불 소화시설 최적후보지 분석, 지진대피소 현황 및 입지 변경 필요지역 장소 도출, 여성 성범죄 취약지역 분석

④ 공공(2) :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최적후보지 분석, 전기차 충전소 입지선정 분석

다. 용역변경의 타당성

당초 GIS데이터분석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을 회계연도 시작 전에 추진하였으나 사전절차 이행 기간(사전규격공고 5일, 입찰공고 5일 등)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이 어렵게 되자 과업기간 및 계약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과업기간	2021.1.1.~2021.12.31.	2021.2.1.~2021.12.31.	12개월→11개월
소요예산	68,200천 원	66,366천 원	유지관리비용 1개월분 감액
계약방법	전자공개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특례적용 종료에 따른 계약방법 수정

○ 2021년도 GIS데이터분석시스템의 연간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에서 2021. 1. 1.부터 1. 31.까지 1월간의 용역이 제외되었다.

[3] 종합판단

가. 본 용역은 매년 GIS분석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으로 용역 발주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 용역의 계약방법, 입찰제한 등을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데이터 분석대상은 수요부서의 요구를 수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당초 GIS데이터분석시스템의 유지관리계약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앞으로 연간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면서 계약지연 등으로 유지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용역(협상에의한계약 긴급)

[1] 사업개요

<table>
<tr>
<td rowspan="2">사
업
개
요</td>
<td rowspan="2">● 사 업 명 :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용역
● 사업기간 : 2020. 7. ~ 2020. 12.
● 사업내용
- 예술가와 소상공인이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니즈를 반영한 매장 내외부 디자인 개선사업
● 위 치 : 남가좌동 백련시장 일대
● 사 업 비 : 127,810,000원
● 현 공 정 : 100% (2020.12.23. 준공)</td>
<td>입찰
또는
계약
현황</td>
<td>● 발주금액 : 130,20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127,810,000원
(낙찰율 : 98.164%)
● 계 약 일 : 2020-09-16
(착수일 : 2020-09-25)
● 발주방식 : 제한경쟁</td>
</tr>
<tr>
<td>계약
내용
변경
현황</td>
<td>●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td>
</tr>
</table>

백련시장 일대에 예술가의 재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가게별 맞춤형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자인 등 예술분야 참여예술가를 선발하여 가게별 예술가 매칭 및 맞춤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본 용역이 추진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청렴감시는 (1) 사업의 타당성, (2)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3) 사업금액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로6길 53-87 소재 백련시장은 1992. 12. 준공한 이후,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되었고 인근 중형마트 형성으로 고객 이탈이 심화되고 상권 침체가 가속화 되었다. 가게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점포별 고유의 특색을 살리는 디자인 마케팅을 통해 대학생 및 주민 등 고객 유치를 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경험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나.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중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또는 제품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자)을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였고, 입찰참자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이후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2)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지표 7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평가하였고, 정량적 및 정성적 지표는 아래의 항목들을 평가하였다.

3) 주식회사 ○○○○가 단독 입찰하였으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입찰자 1인으로 1회 유찰시에도 ‘20년 말까지 재공고 입찰을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한시 허용하는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주식회사 ○○○○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였다.

4) 7명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하여 가격평가 10점,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 18점, 정성적 평가 59점, 합계 87점으로 주식회사 ○○○○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 사업금액의 적정성

 이 사건 계약은 13명의 참여예술가가 백련시장 및 인근 33개의 점포 인테리어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면 116,191,171원이다. 이 중 55%에 해당하는 70,200,000원은 참여예술가에게

지급되었다(각 1,800,000원 * 13명 * 3회). 그리고 점포지원비로 점포당 100만원의 재료비용이 지급되었고, 업체 선정 심사비용, 홍보비, 발대식, 결과보고서 작성 비용으로 5,100,000원이 사용되었다.

일반관리비 3,422,280원을 제외하면, 낙찰자로 결정된 주식회사 ○○○○는 4,468,891원의 이윤을 얻은 것으로 사업 총금액 및 그 분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종합판단

가. 이 사건 사업은 노후화된 전통 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고객 유치를 통하여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지역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나. 제안서 평가 역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였고, 정량적 평가는 보유 및 투입인력,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여부,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였고, 정성적 평가는 사업기획 30점, 사업운영 30점, 홍보 및 평가 10점으로, 사업기획 평가에는 과업이해도 및 완성도(실현가능성)을, 사업운영 평가에는 예술가 선발 및 관리와 사업비 운용계획을, 홍보 및 평가에는 사업 홍보 및 성과 평가를 그 항목으로 평가하였는데, 해당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평가 기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의 구성 역시 서대문구 계약실무 매뉴얼에 명시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기준을 참고하여 구성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주식회사 ○○○○가 단독으로 입찰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단독 입찰의 경우에도 재공고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과보고서에 따를 때, 중복된 서류 제출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고 소상공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예술가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을 보았을 때, 차후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경우 관련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DMC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DMC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 사업기간 : 2020-12-07~2021.9.30. ● 사업내용 - 재건축 판정 및 정비계획 입안여부 결정 ● 위　치 : 북가좌동 431번지 ● 사 업 비 : 163,251,000원 ※ 설계변경 금액 : 149,072,000원 ● 현 공 정 : 준공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163,251,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141,328,000원 (낙찰율 : 87.103%) ● 계 약 일 : 2020-11-23 (착수일 : 2020-12-07) ● 발주방식 : 일반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증감 : 7,744,000원 ● 준공정산 : 149,072,000원 ※ 준공 후 준공정산금액 기재 필요

본 용역은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 현장 조사 결과, 구조 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실시로 결정됨에 따라 정비계획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임.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용역의 타당성

1) 본 사업은 현지조사결과,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평가 안전진단 실시로 결정됨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정함

2) 개요

① 사업예산 : 163,251천원

②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431번지(대지면적 30,724m^2)

③ 건물 규모 : 공동주택 6개동 660세대(지하1층, 지상13-15층)

나. 계약의 적정성

1) 입찰방법 : 일반경쟁,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2) 입찰참가자격 :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단독이행 (공동이행불가)

다. 참가업체별 평가결과(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주요평가사항은 ①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 “45점”, ②참여사의 유사용역 실적 “25점”, ③신용도 “10점”, ④기술개발비 및 투자실적 “10점”, ⑤업무중첩도 “10점”이다.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번	업체명	총계	연번	업체명	총계
1	㈜☆☆☆☆☆☆☆☆	96.1	8	㈜업체8	95.3
2	㈜업체2	97.7	9	㈜업체9	96.4
3	㈜업체3	98.4	10	㈜업체10	94.7
4	㈜업체4	93.8	11	㈜업체11	96.86
5	㈜업체5	98.7	12	㈜업체12	98
6	㈜업체6	94.6	13	㈜업체13	96.9
7	㈜업체7	99	14	㈜업체14	93.4

라. 낙찰자 선정

낙찰자 선정 및 전자계약체결안내[재무과-27458(2020.11.16.)호] 의거 용역입찰결과 아래와 같이 낙찰자가 결정됨

용역명	대상업체	낙찰가	비고
DMC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용역	㈜☆☆☆☆☆☆☆	금141,328,000원 (87.103%)	주택과 계약일 : 2020.11.30.

※ 계약방법 : 전자계약(조달청 G2B 통한 전자계약)

마. 설계변경

용역 기간 및 금액변경요청 접수보고서 [주택과-2789호(2021.1.25.)]
공사기간 연장 (당초) 2021.2.4. → (변경) 2021.3.31.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세대방문 기피 및 지반조사 2개소 실시로 55일 연장되었음.

[3] 종합판단

가. 본 과업은 수탁사업으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나. 본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일반경쟁 사업능력평가(PQ) 후 가격 입찰에 의해 적정하게 시행된 것으로 판단됨

다. DMC한양아파트의 경우 민간 재건축아파트 안전진단을 조합 비용으로 수탁공사를 진행한 사항으로 사업비를 조합에서 납부하고 용역감독을 구청 주택과에서 한 부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라.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9조」(안전진단 절차별 비용 분담)에 근거하고, 세입세출외현금 납입고지서 송부(안전진단용역) [주택과-8013호(2020.9.2.)호]에 의거 DMC한양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163,251,000원 납입고지서 의거 납부토록 송부되었음.

마. 설계변경된 공기연장 및 지반조사(2개소)를 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이 건은 건축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추후 유사한 용역 시행 시 관련 부서(건축분야 : 건축과 등)와 협의하여 관련 분야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용역이 이행되도록 하기 바람.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Q)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사업기간 : 2020. 6.23. ~ 2021. 7.18. ● 사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 150톤/일 규모로 시설 개보수 - 노후 기계설비·전기 및 제어장비 교체, 호퍼 등 필수시설 확충 -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난지물재생센터 내) ● 사 업 비 : 610,280,000원 ● 현 공 정 : 40%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711,92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610,280,000원 (낙찰율 : 87.519%) ● 계 약 일 : 2020-06-23 (착수일 : 2020-06-24) ● 발주방식 : 일반경쟁
		계약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2회 ● 계약금액 증감 : 없음 ● 준공정산 : 설계 중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1)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시설조성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2) 공공처리시설 정상가동으로 6개 지방정부의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처리 비용 절감
3) 본 사업은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난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보수 공사 전체 범위를 용역에 포함하므로 사업진행은 타당함.

나. 계약의 적정성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가격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사업비 7.16억원)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가격입찰이 적정함.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1)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다음과 같음.

① 평가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2020.4.1.)
-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서대문구 공고 제2020-101호)

② 수행능력평가결과 (절대평가+상대평가)

접수번호	업체명	절대평가	상대평가	합계	순위
1	㈜○○+㈜△△	92.99	1.8	94.79	3
2	㈜◎◎+㈜◇◇◇◇◇	95.31	3.0	98.31	2
3	㈜▽▽▽▽+(주)☆☆	96.42	2.4	98.82	1

③ 절대평가별 총괄 집계표

구분	1. ㈜○○+㈜△△	2. ㈜◎◎+㈜◇◇◇◇◇	3. ㈜▽▽▽▽+㈜☆☆	비고
자체평가	95.99	96.01	96.42	
평가팀 평가	92.99	95.31	96.42	
차이	-3	-0.7	0	

④ 사업책임기술자 평가 집계표(기술 및 업무 관리능력)

접수번호	업체명	평가점수			평균	비고
		위원 A	위원 B	위원 C		
1	㈜○○+㈜△△	1.8	1.8	1.8	1.8	
2	㈜◎◎+ ㈜◇◇◇◇◇	3	3	3	3	
3	㈜▽▽▽▽+ (주)☆☆	2.4	2.4	2.4	2.4	

라. 조사

1) 본 용역은 설계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 입찰공고안 협의 등을 기술심사담당관(서울시) 협의를 거쳐 사업수행능력평가(유사실적)를 협의하여 당초 입찰공고하였으나, 입찰 응찰자는 1개사로 유찰되었습니다. 유사실적 이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난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변경 공고시행[청소행정과-12621(2020.5.13.)호]" 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함으로써 당초에 충분한 검토 없이 공고 후 입찰참가자격제한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요청이 있어 변경되었음

※난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변경 공고시행[청소행정과-12621(2020.5.13.)호] 중 변경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유사용역실적)	유사용역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또는 혐기성 소화시설)의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참여 실적으로 회사 지분 금액이 1건당 1억원이상 준공된 실적	유사용역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시행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참여 실적으로 회사 지분 금액이 1건당 1억원 이상 준공 실적에 한함.(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중 2.최종처분시설과 3.재활용시설 중 라~차항 제외)

2) 2020년 1차(3월) 투자심사 결과[시 재정균형 발전담당관-4081(2020.3.27.)호]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보수(예산 13,582백만원, 시·구비 각50) 조건비용일부 [민간전문가 협의체구성] 운영조건으로 승인되었음

3) 실정보고 제1회 검토보고서에 의거, 기계설비의 전체 교체에 의거 하중증가 대비 안정성검토로 지반조사 2승(NX) 12,045천원, 현황측량 4,785천원(9,000m^2 지장물조사포함) 확인이 요구됨

4) 본 사업은 2020.6.28. 착공되어 사전협의(고양시, 주민설명 등)를 이유로 계속 공사가 연장되고 있음
[당초] 2020.6.24.~2020.12.18.
[변경] 2020.6.24.~2021.12.18.

[3] 종합판단

가. 입찰 공고 중 수행능력평가(유사용역실적)를 당초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승인받아 1회 입찰공고 후 변경, 당초 입찰공고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였으며 특히 변경 시에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재협의를 하지 않고 시행되었다고 판단됨.

나. 본 사업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예산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본 계약 용역은 재이월 불가로 계약중도 해지될 수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한 민간위탁음식물폐기물처리 기한(2022.6.30.준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다. 본 사업 지연 사유는 「지질조사(NX). 민원」으로 지질조사는 설계자인 ㈜○○에 보링(NX)→보링(BX) 사업 마무리 가능여부를 협의하였으나 “해당 시설물은 내진 대상으로 지반종류 결정이 불가하며 구조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구조물 확보 역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4] 조치의견 : 권고 및 의견표명

가. 본 사업의 입찰 공고 중 사업수행능력평가(유사용역실적)는 입찰공고 작성 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입찰 공고 변경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의견 표명>

나. 본 사업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예산 불용 시 예산 추가 확보 등 사업 지연으로 민간위탁자에게 음식물처리비가 본사업의 지연기간만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됨. <의견표명>

다. 본 사업은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현재 난지재생물센터는 관할지역이 고양시로 지질조사(NXΦ3”)는 허가사항으로 용역 착공 후(2020.6.24.) 계속 지연되고 있음 (사고이월 사업으로 재이월 불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고양시 허가 사항이 아닌, 지질조사(BXΦ2”) 보링을 실시하거나, 또는 기존 지질조사(난지물재생센터 및 서울시 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에서 건설중인 총인처리시설공사 등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추후 공사 시행 시, 공사계약 설계변경 조건「여건 변경, 착오 오류」으로 지반 굴착에 따른 지질이 상이(相異)할 시 설계변경 가능하므로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권고>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설계 용역(PQ)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 네트워크조성 기본설계 용역 ● 사업기간 : 2020.4.6. ~ 2021.8.31. ● 사업내용 - 지하연결통로(폭 9~15m, 연장 233m) ● 위 치 : 홍제역~홍은사거리 ● 사 업 비 : 850,241,200원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819,73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707,680,000원 (낙찰율 : 86.317%) ● 계 약 일 : 2020-03-31 (착수일 : 2020-04-06) ● 발주방식 : 일반경쟁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증 142,561,200원

홍제역세권 재정비사업과 연계한 홍제권역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입니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PQ)평가 후 가격 입찰)

2) 입찰자격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건설부문 중 5개 전문분야(구조, 토질·지질, 도로·공항, 교통, 건축)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등 5개 전문분야(구조, 토질·지질, 도로·공항, 교통, 건축)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2개사 이상 5개사 이하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측량, 지반분야

에 대한 것만 분담이 가능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용역의 타당성

1)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인왕 시장 일대 등 홍제역세권 재정비와 연계한 홍제권역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
2) 지하철 3호선 홍제역사, 신설 강북순환선 및 통일로 지하공간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결통로 조성의 기본 구상을 마련
3) 지하 구조물 설치에 대한 입체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통일로 지하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단위사업 간 개별시기, 방법, 형태 등을 계획 가능토록 함
4) 본 용역을 통해 계획을 일체화하고 개발사업의 단계적인 추진 유도

다. 설계변경의 타당성

지반조사 실적수량 및 시추심도 추가 정산, 지하철 3호선 터널 안전성 검증 추가 과업에 따른 설계변경

[3] 종합판단

가. 계약방법 및 입찰자격은 적정하며, 이에 의하여 ㈜☆☆, ㈜○○○○○○○○, ㈜□□□□□□□□□, ㈜△△△△가 낙찰되었다.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본 용역을 통해 계획을 일체화하고 개발사업의 단계적인 추진을 유도하여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의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인왕 시장 일대 등 홍제역세권 재정비와 연계한 홍제권역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설계변경에 있어서 지반조사 실적수량 및 시추심도 추가 정산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견적 처리한 지하수 모델링 해석비(14,552,000원) 및 지하철 3호선 터널 안전성 검증비(1억 원)는 추가 과업에 따른 설계변경이 아니고 과업내용서 p.49 구조계산의 안정성 검토에 해당하므로 추가 비용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의 변경) 제④항에 "…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라. 당초 계약금액 대비 20%가 증가하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생략한 것은 공사비 증가를 억제하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의 근본 목적을 배제하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및 감사요구

가. 지하수 모델링 해석비 및 지하철 3호선 터널 안전성 검증비에 대한 산출 내역과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라며, 설계변경이 타당한 경우에는 당초 설계자가 미반영한 사유를 첨부해야 할 것임 <권고>

나. 터널의 안전성 검증비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의 변경) 제④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또한 설계변경심의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감사조치 바람 <감사요구>

제3장 수의계약

홍제3동 개미마을 일대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홍제3동 개미마을 일대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21.5.~2021.11. ● 사업내용 - 개미마을 일대 노후 주거지 재생 ● 위 치 : 개미마을, 홍제4구역 ● 사 업 비 : 69,600천원(구비) ● 현 공 정 : 50%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69,60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67,500,000원 ● 계 약 일 : 2021-05-10 (착수일 : 2021-05-11) ● 발주방식 : 수의계약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0회 ● 계약금액 증감 : 0원 ● 준공정산 : 0원

홍제3동 개미마을 일대는 토지소유자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성이 낮은 노후주거단지 재생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위 일대의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용역이 진행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청렴감시는 (1) 사업의 타당성, (2)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홍제3동 개미마을 일대는 가파른 언덕길, 도시가스·상수도 시설 부재, 건축물 노후화가 심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개미마을 일대 토지 및 건물은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과반의 토지소유자가 외지인으로 개발 동의율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서울시·SH공사 간 열악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추진 회의 결과 사업주체 불분명, 낮은 사업성,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 곤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위 지역

(홍제동 9-81 외 5필지) 및 구 홍제 4구역 일대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내용으로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나.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31조 및 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중에, i)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ii)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응모 할 수 있고 자격 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참여가능 하였다. 입찰참자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자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였다.

2) 제안서 평가는 객관적 지표 20점, 주관적 지표 7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평가하였고, 정량적 및 정성적 지표는 아래의 항목들을 평가하였다.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대표사 ㈜□□ 및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공동수급자 ㈜건축사사무소 △△△△△△가 공동으로 단독 입찰하였다. 용역입찰공고 및 재공고가 모두 유찰되어 위 업체들에 대하여 업체 제안서 평가를 하였는데, 7명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하여 가격평가 10점, 기술평가 중 객관적 평가 20점, 주관

적 평가 62점, 합계 92점으로 되어, 계약자격이 적격하다고 판단하여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다.

[3] 종합판단

가. 이 사건 사업은 토지소유자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성이 낮은 홍제3동 개미마을 일대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용역의 진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6. 12. 서대문구 도시계획과는 서울시와 협업하여 '서울시 주요열악지역 정비전략 제안'이라는 용역을 진행하여 희망촌 및 개미마을 정비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해당 용역은 이 사건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주거 대안모델을 검토하고 저소득층 주거지 개발을 위하여 통합 마스터플랜 및 사업방식 제시 및 제도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제도개선안은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제안서 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진행하였고, 주관적 평가는 과업내용 이해도, 기본구상안 설정, 과업 수행계획, 용역관리 계획을 평가하였고, 객관적 평가는 참여인력 및 경력, 최근 5년간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회사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며, 이외에도 해당기업이 약자 및 우수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등을 가산점 요소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는데, 해당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평가 기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의 구성 역시 서대문구 계약실무 매뉴얼에 명시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기준을 참고하여 구성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가 공동계약(분담이행)으로 입찰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는데, 입찰공고 및 재공고

가 모두 유찰되어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계약자격이 적격으로 판단되어 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바, 선정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 선정업체는 2021. 5. 12.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1. 10. 6.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후, 2021. 11. 9. 용역을 종료한 후, 홍제3동 개미마을 일대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 최종보고자료를 제출한 바, 적합하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2016. 12. 도시계획과는 서울시와 협업하여 개미마을 정비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해당 용역은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새로운 용역을 계획함에 있어 과거 유사한 용역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용역 결과를 참조하여 용역 진행여부를 결정하고, 과거 용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용역 의뢰 과정에서 과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한 용역이 되도록 하기 바람.

서대문구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제작 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대문구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제작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사업내용: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제작 ● 사 업 비 : 47,700,000원 ● 준 공 : 100%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53,00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47,700,000원 ● 계 약 일 : 2021-05-10 (착수일 : 2021-05-17) ● 발주방식 : 수의계약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해당없음 ● **계약금액 증감** : 해당없음 ● **준공정산** : 해당없음

모바일 기반 관광 전자지도 시스템을 통한 편리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자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관광 정보 제공으로 관광객이 편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지역 관광기반을 확충하고자 본 계약이 체결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청렴감시는 (1) 사업의 타당성, (2)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타당성

언택드 뉴노멀 시대를 반영하여 기존의 종이지도, 홈페이지 안내 등의 경직된 관광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사물인터넷 위치기반 등 용이한 접근성을 구현한 모바일 관광전자지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여행 및 관광정보 검색, 길안내 지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편리하고 스마트한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객 편의 제공 등 관광기반 마련하여 서대문의 관광홍보 효과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사업이 시작되었다.

나.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과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모두 등록한 업체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를 모두 보유하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시각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시각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 전문회사로 자격을 제한하였다.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최근 3년 이내에 관광전자지도 웹사이트 구축 수행 3건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이고, 디자인사업자는 최근 3년 이내에 다국어관광지도 납품 수행 1건 이사의 수행실적으로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대표사로 하여 시각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와 함께 수급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따라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2차례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과 □□□□가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3] 종합판단

가. 본 사업을 통하여, 관광객 맞춤형 원터치 검색 및 안내가 가능하고 지도화면 원터치 및 움직이는 아이콘을 통해 관광지 안내 정보 및 길안내 서비스를 지원하며 테마별 분류 등을 통하여 관심사별 검색이 가능한 서대문구 스마트 관광전자지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른 지도 어플리케이션에 위와 같은 기능이 있고 길안내 기능은 기존의 카카오 내비게이션과 연동되게 하였으며, 관광지 안내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개 내용과 차별성이 없는 정보 등을 나열한 바, 본 사업을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관광전자지도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등과 차별성이 있는지,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서대문구 스마트 관광전자지도를 사용하였던 주민 역시 지난 2021. 8.부터 2021. 10.까지 서비스 오픈 초기임에도 총 1,996명(1일 평균 22명)으로 그 활용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 스마트 관광전자지도에 접속하면 뜨는 팝업 역시, 서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면 충분하고, 오히려 일일 접속자 수가 많은 서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것이 그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최초 계획 시 추진하고자 하였던 지역 상인회 등과 연계하여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 적은 없고(이 사건 용역을 시작하였던 당시에도 코로나 19의 영향은 예상 가능한 변수였던 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하여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스탬프 투어 인증시스템을 이용한 랜선 투어도 지난 3개월간 1건에 불과하고 참여자도 81명에 불과하다.

또한, 최초 계약 시 추진하고자 하였던 관광지에 대한 자동 해설서비스도 현재 제공되지 않고 추가 프로그램 개발 및 업데이트 등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바, 별도의 개발 비용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최초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해당 계약의 낙찰 기준인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적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발생할 수 없다. 낙찰자가 없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지만, 선정대상회사는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전문성 있는 업체로 보인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가. 접근이 용이하고 기능도 뛰어난 모바일 기반 관광 전자지도는 쉽게 검색 가능하고, 해당 전자지도로 서대문구의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기존의 전자지도와 큰 차별성이 없는 이 사건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확인하기 바람.

나. 서대문구 스마트 전자지도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검색을 통해서도 서대문구 스마트 전자지도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일별 방문자 수가 오픈 초기임에도 22명가량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향후 이 사건 스마트 전자지도를 어떻게 홍보하여 활성화 시킬 것인지 고민하기 바람.

다.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당시 추진하고자 하였던, 스탬프 투어, 지역 상인회 등과 연계한 온라인 행사 등의 진행상황이 없거나 매우 적은 바, 향후 이 사건 용역 결과물을 차별성 있는 서대문구 전자 지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기 바람.

라.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른 지도 어플리케이션과 검색 엔진 등을 통하여 쉽게 검색가능한 수준의 정보가 아니라 서대문구만의 독창적인 정보 및 행사들이 소개되고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향후 업데이트 등을 진행하기 바람.

마. 추가 질의 회신 당시, 이 사건 결과물이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하여 홍보영상을 제작하며, 2022년 각종 행사시 이 사건 결과물을 연동하여 가족 행사들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구상중이라고 한 바, 향후 이 사건 결과물이 최초 개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코로나19 확산방지용 주민센터 및 보건소 물품구매(얼굴인식카메라)

[1] 사업개요

<table>
<tr>
<td rowspan="2">사
업
개
요</td>
<td rowspan="2">● 사 업 명 : 코로나19 확산방지용 주민센터 및 보건소 물품구매 (얼굴인식카메라)
● 사업기간 : 2020.9.1.~9.30.
● 사업내용
- 각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보건소 별관입구 안면인식열화상카메라 설치
● 위 치 : 각 동 주민센터 등 24개소
● 사 업 비 : 52,272,000
● 현 공 정 : 100%</td>
<td>입찰
또는
계약
현황</td>
<td>● 발주금액 : 58,08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52,272,000원
● 계 약 일 : 2020-09-07
● 발주방식 : 수의계약</td>
</tr>
<tr>
<td>계약
내용
변경
현황</td>
<td>● 설계변경 횟수 : 0회
● 계약금액 증감 : 0원
● 준공정산 : 0원</td>
</tr>
</table>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감염을 차단하고자 14개 동주민센터 및 6개 자치회관 등 총 24개소에 얼굴인식카메라를 구매하는 본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청렴감시는 (1) 감사제외 대상 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감사제외 대상 여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열감지기(열화상 카메라),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일상감사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감사담당관-2190 공문으로, 사인의 시급성 및 중대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를 때, ‘일상감사’

란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요 업무 집행이 이뤄진 이후,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진행하는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에는 포함되지 않는 바, 감사제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사업의 타당성

코로나19의 상황 장기화와 확산율 증가로 인하여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건분소, 지소, 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에 얼굴인식(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서울시 집단감염이 재확산 됨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청사에 대한 안전확보가 필요하다. 본 사업은 공공시설 주 출입구에 얼굴인식(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그 목적으로 하는 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 계약업체 선정의 적합성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 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2020. 9. 당시에는 코로나19의 상황 장기화와 확산율 증가로 위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사유 중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양질의 물품을 적가에 공급하는 업체가 있다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서대분구 보건위생과는 2020. 9. 7. 주식회사 *******와 얼굴인식카메라(제품명 : YK-THP1)을 24대(각 198만원), 총 계약금액 4,752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확인해 본 얼굴인식카메라(제품명 : YK-THP1)의 가격은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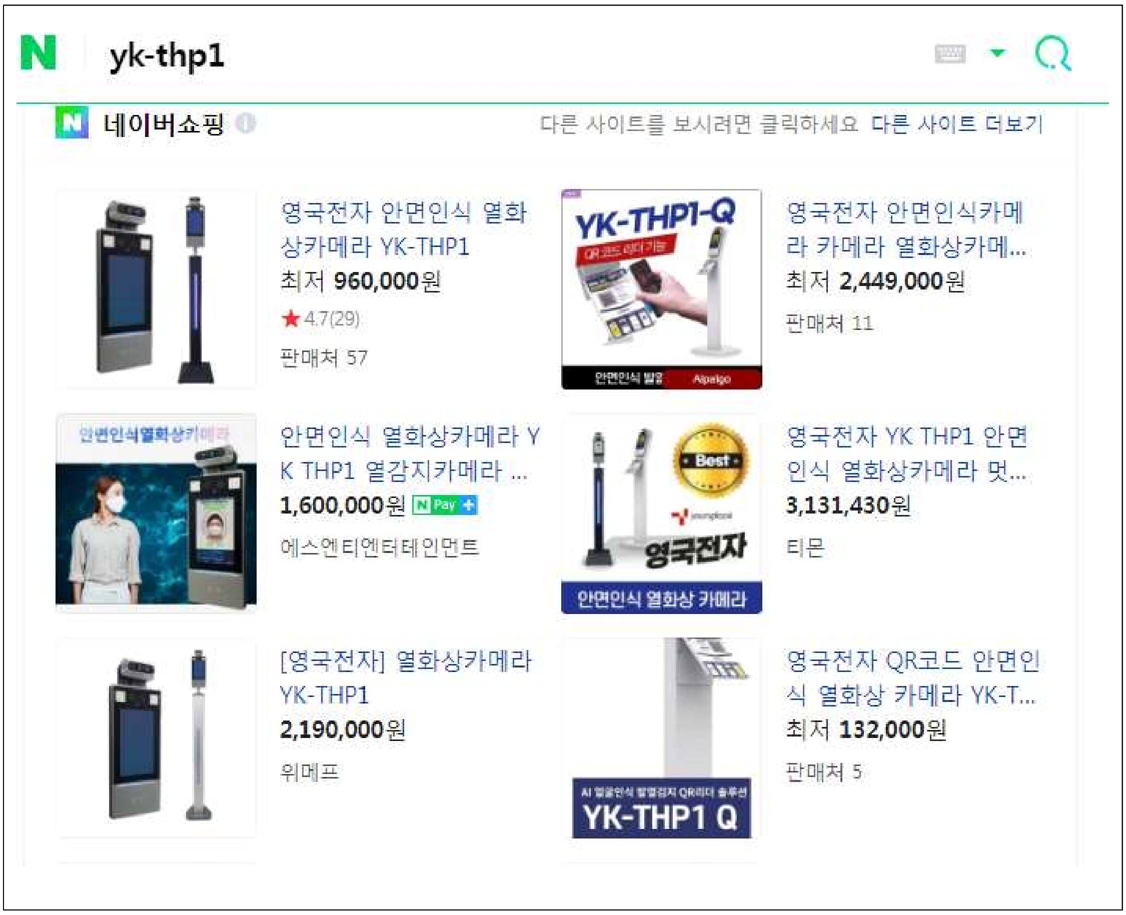

3) 이 사건 계약은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는 계약으로 양질의 물품을 적가에 공급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와의 계약이 가능하다. 서대문구 보건위생과는 아래와 같은 업체들로부터 비교견적으로 받아서, 체온인식 제품들 중 청사를 출입하는 구민들에게 체온측정과정이 액정패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안면인식이 가능하고, 같은 안면인식 제품들 중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애인기업인 ‘＊＊＊＊＊＊＊＊＊＊＊＊’을 선정하였다.

얼굴인식 카메라 비교

	업체명	품번	최종가격	조달구매 여부	제품형태	측정부위	비고
1번	[redacted]	ENP-FT207	2,970,000원	가능	단말기 타입 (화면존재)	얼굴	제품보증
2번	선정업체	KDW-Thermal-PAD	2,420,000원	불가	단말기 타입 (화면존재)	얼굴	제품보증
3번	[redacted]	BS-2020	1,265,000원	불가	본체 타입 (화면없음)	이마	제품보증
4번	[redacted]	COVID KIOSK	1,650,000원	불가	단말기 타입 (화면존재)	손목	제품보증

※ 각 동 배부 및 마을회관, 보건소 지소, 분소 배부예정

[3] 종합판단

가. 이 사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곳에 얼굴인식(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한 사업으로,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나. 양질의 물품을 적가에 공급하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하고 최선의 제품을 납품받고자 노력한 바,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시제품 설명 등을 통하여 납품받을 제품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견적서의 제품 품번(명칭)이 실제 납품받은 제품 품번과 상이하고(견적서 기재 품번은 얼굴 인식 카메라가 아닌 패드 종류인 것으로 보임), 옴부즈만 확인서류에 해당 제품의 정확한 품번이 기재된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바, 계약 과정에서 담당자가 관련 문서에도 해당

제품의 정확한 명칭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가. 내부 품의 서류를 포함한 모든 보관서류에 해당 제품의 품번(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바, 추후 계약에서는 ‘얼굴인식카메라’ 등으로만 표현하지 말고 납품받은 제품의 품번을 기재할 것.

나. 담당부서로부터 별도로 전달받은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 품번 제품과 납품받은 제품이 상이한 바, 시제품 설명 등을 통하여 해당 제품을 확인하였더라도 문서에도 해당 제품의 정확한 명칭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할 것.

1. 코로나19 및 미세먼지 대응 저소득층 마스크 구매
2.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마스크) 구매
3.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아동용 마스크 구매

[1] 사업개요

(1) 코로나19 및 미세먼지 대응 저소득층 마스크 구매 [사회복지과]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및 미세먼지 대응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07.~11. ● 사업내용 : KF마스크 330,000매 구매 - 16,500명 × 20매 = 330,000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 생활시설 거주자 ● 위 치 : 각 동 주민센터 ● 사 업 비 : 297,000,000원 ● 현 공 정 : 100%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297,00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247,500,000원 ● 계 약 일 : 2020-07-07 ● 발주방식 : 수의계약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해당없음 ● 계약금액 증감 : 원 ● 준공정산 : 원

(2)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마스크) 구매 [어르신복지과]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마스크) 구매 ● 사업내용 :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마스크) 교부- 노인의료복지시설 : 18개소 - 노인재개복지시설 : 19개소 ● 사 업 비 : 104,000,000원 ● 현 공 정 : 100%(준공일 : 2020.6.30.)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104,00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93,600,000원 ● 계 약 일 : 2020-06-10 ● 발주방식 : 수의계약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 원 ● 준공정산 : 93,600,000 원

(3)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아동용 마스크 구매 [여성가족과]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아동용 마스크 구매 ● 사업기간 : 2020.6.25. ~ 7.24. ● 사업내용 : 코로나19 대비 어린이집 아동용 마스크 구매 ● 위 치 : 관내 어린이집에 배부 ● 사 업 비 : 100,000,000원 ● 현 공 정 : 100% (2020.7.24.)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100,00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100,000,000원 ● 계 약 일 : 2020-06-30 ● 발주방식 : 수의계약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없음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에서는 각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에 마스크를 구매하여 공급하였다. 본 사업에 대한 청렴감시는 (1) 사업의 타당성, (2) 계약 적정성, (3) 부서 간 구매실태를 비교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추진 개요

(1) 코로나 19 및 미세먼지 대응 저소득층 마스크 구입

코로나19 확산 및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계획(사회복지과-9738, 2020. 3. 24.)」을 수립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15,536명(기초생활수급자 8,664명, 차상위계층 6,729명, 기타 143명)과 사회복지 생활시설 거주자 964명 등 16,500명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1인당 20매) 330,000매를 구매(예산 486,302,000원 국비 30%, 시비 70%)하여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조기 보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초 마스크 구매를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적격심사 결과 1, 2순위 업체는 탈락하고, 3순위 업체인 ○○○○을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위 업체는 물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담당부서에서는 마스크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견적을 받는 등 적격업체를 발굴하여 수의계약하고, 마스크 구매단가(750원) 절감으로 인한 예산은 불용을 최소화 하고자 마스크를 최대 추가구매(수량 640,000개, 1인당 35개)하는「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 관련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변경 계획(사회복지과-20322, 2020. 6,30.)」을 수립하였다.

그런 후 당초 조달청 입찰공고 2회 유찰 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시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2020. 7. 7. 공급업체 △△△△△△△△△과 수의계약으로 KF94마스크 310,000매(대형 306,545매, 소형 3,455매, 금액 238,700,00원)를 1차 구매하여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배부하였다.

같은 해 7. 8. 코로나19대응 및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 관련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1차 마스크 구매 시 낙찰차액(49,500,000원) 과 집행잔액 (189,302,000원) 등 계 235,500,000원을 추가로 마스크(310,000매) 구매하여 저소득층 1인당 35매(1차분 포함)를 지원하였다

(2)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구매

2020. 5. 22. 어르신복지과에서 코로나 19 대비 복지시설(의료, 재가, 장기용양기관, 맞춤돌봄수행기관)에 방역물품 지원계획 수립하였다.

노인복지시설 108개소(노인의료복지시설 1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0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68개소,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관 2개소), 이용 어르신 및 시설 종사자 4,052명에게 마스크 75,635개(단가 1,500원, 계 113,452,500원, 1인당 10매×3개월, 방문요양은 1인당 5매)을 구매하여 지원하는 안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마스크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기한 내 공급이 가능하며 타업체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사유로 주식회사 ☆☆☆와 2020. 6. 10. 수의계약(마스크(KF94) 80,000매, 단가 1,300원, 금액 104,000,000원, 시비)를 체결하였다.

(3) 어린이집 마스크 지원

코로나 19 대비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마스크 지원 계획(여성가족과 14138, 4. 20.)을 수립하여 서대문구 관내 어린이집(144개소) 재원아동 5,801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되 소요예산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8조에 따라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 예산(100,000,000원)에서 집행하였다. 구매방법은 시장조사 결과 구매단가 750원(1개당)에 55,000매 이상 아동용 마스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인 주식

회사 □□□□□와 2020. 6. 30. 수의계약하였다. 어린이집 재원아동 총 5,801명에게 아동용 마스크 총 133,400매 지원(1인당 22.9매)하였다.

[3] 종합판단

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감염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 마스크를 구매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 수의계약에 의해 마스크를 구매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구매단가는 시장조사하여 가장 저렴하게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낙찰업체가 계약을 포기한데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한을 면제한 것은 당시 정부(식약처)에서 마스크 생산 판매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위 업체에 판매 사전 승인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등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각각 시장조사하여 적격업체와 수의계약하였으나 업무중복 등이 우려되므로 전담(총괄)부서를 지정 운영하였더라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바. 이 건 팬데믹 상황에서 빠른 시기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일시에 다량의 마스크를 확보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앞으로 다수 부서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일 품목을 구매할 경우 전담(총괄)부서를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CCTV회선 자가정보통신망 전환 정보통신장비 구매설치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CCTV회선 자가정보통신망 전환 정보통신장비 구매설치 ● 사업기간 : 2021년 4월 ~ 7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임대망으로 운영중인 CCTV 100개소를 자가통신망으로 전환 - 백본스위치 2대, 산업용스위치 100대 구매설치, 광케이블접속시스템 재구성 외 ● 위 치 : 서대문구 전역 ● 사 업 비 : 331,727,000원 ● 현 공 정 : 90% (7.7.기준)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331,727,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306,130,000원 ● 계 약 일 : 2021-05-28 ● 발주방식 : 수의계약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 ● 계약금액 증감 : - ● 준공정산 : -

서대문구에서 관내 임대 전용망으로 운영중인 CCTV회선을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으로 전환・구축하는 사업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자격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자

② 계약 후 5일 이내에 Extreme Networks(스위치)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③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사업자 선정

① CCTV회선 자가정보통신망 전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② ㈜○○○○○ 1개 업체만 입찰참가,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90점 : 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③ 「지방계약법시행령」제26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9호, 2020.12.24.)에 의해 제안서 제출업체의 기술능력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어 제안업체와 수의계약

나. 사업의 타당성

1)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시(‘18년 11월) 임대회선 비중이 높은 서대문구는 다른 구에 비해 장해율이 현저히 높아 자체 대응 가능한 방안 필요

2) 주민안전을 위한 CCTV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임대통신망 회선비 증가

3) 고해상도 카메라 설치에 따른 CCTV 영상전송 통신대역폭 확대 필요

4) CCTV회선의 50% 이상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하되 기존 이용 중인 전용회선 약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2020년 1단계 추진 27개소 전환 완료(120백만 원)

다. 사업 추진 내용

≪ 자가통신망설치≫

구분	총계	구축 전		구축 후	
		임대	자가	임대	자가
회선(개소)	846	440	406	340	506
구성비(%)	100	52	48	40	60

1) CCTV 자가정보통신망 백본스위치 2대 설치(이중화 구성)

2) CCTV 현장 산업용스위치 100대 설치

3) 광접속장치 30대 설치, 광케이블 접속・성단・시험(1,000코아) 등 추진

※ 그러나 CCTV 자가전환대상에 대한 우선순위 자료 미비

[3] 종합판단

가. 임대통신망을 이용 중인 CCTV의 자가통신망 전환은 타당하나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적정 전환비율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건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한 정부방침에 따라 입찰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안심사 평가하여 수의 계약한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전환대상 CCTV를 임대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함으로 임대기간 종료가 가깝고, 특정지역에 집중된 것 위주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근거자료가 없어 합리적인 교체 우선순위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앞으로 CCTV회선 자가정보통신망을 전환할 경우 비용편익분석 등에 의한 적정 전환 비율을 수립하고, 교체대상에 대한 우선 선정 순위를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서대문 공공산후조리원 설계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 산후조리원 건축 설계 ● 사업기간 : 2018년 9월 ~ 2021년 5월 ● 사업내용 - 공공산후조리원과 모자건강센터 건립 ● 위 치 : 북가좌동 337-2외 2필지 ● 사 업 비 : 220,070천원 ● 현 공 정 : 100% (2021.5.17. 준공)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220,070,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220,070,000원 ● 계 약 일 : 2020-10-16 (착수일 : 2020-09-19) ● 발주방식 : 수의계약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 계약금액 증감 : 원 ● 준공정산 : 원

취약계층 출산가정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출산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구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검토를 시작하였으나 모자통합 서비스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모자보건지소(임신준비부터 출산·육아까지 One-stop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 개념의 모자건강센터 시설을 추가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건립을 추진함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적정성

1) 추진배경

-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감소의 가속화에 대한 우리사회가 극복해야 할 핵심과제로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임
- 핵가족화와 경제활동 확대 등 가족 내 돌봄 지지기반이 약화되는 현상을 보완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공공 지원체계가 필요함
- 취약계층의 사회적 불평등을 경감시키고 저렴하고 안전한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추진근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모자보건법 제3조 제2항)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운영(모자보건법 제15조의 17)
-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2018.7.1.)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대문
- 제35대 서울특별시장 공약사항 :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도시보건시설 확충

3) 서대문구 센터현황 및 추진 과정

① 현황

- 출생아수 : 2013년 2,334명에서 2017년 1,917명으로 17.87% 감소
- 민간산후조리원 : 관내 2개소에 31실이 있으며 연간 806명(기본 2주 이용)이 이용 가능하며 이는 2017년 기준 관내 출생아의 42%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

② 추진과정

- 2018년 9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계획수립
- 2018년 10월 일정지역 내 편중되지 않게 북가좌동 불광천변 일원으로 선정
- 2019년 1월 토지 및 건물 매입 완료
- 2019년 2월 기준매입부지 인접대지 거주자가 일조권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매도의사 밝힘
- 2019년 4월 정책자문회의에서 건립규모를 확대하여 모자보건지소로서의 기능 검토 필요성제기
- 2019년 6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기능 변경과 확대계획에 따른 부지 추가매입검토 : 기존계획 부지가 면적이 작고(건폐율 60%일 때 건축 면적 68.1평) ㄱ자형으로 효율적인 설계가 힘들었으나 추가매입(건폐율 60%일 때 건축면적 102평)하면 효율적인 계획이 기대됨
- 2019년 ~9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진행
- 2019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 2020년 1월 부지의 추가매입 완료
- 2020년 5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③ 사업규모 및 사업비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375.㎡ 내외)
- 사업비 7,127백만원 (구비100%)

나. 설계공모와 계약의 적정성

공공산후조리원의 우수한 설계안과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용역을 추진

1) 추진근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 2019.4.30.)
- 공공건축 설계공모 절차 및 기준(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2016.10.)
- 서대문 공공산후조리원 설계공모 계획(지역건강과-14)

2) 공모개요

① 공모기간 :2020. 7. 24. ~ 9. 8.

②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 5인 이하 범위에서 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

③ 참가업체 : 최종 15개 작품이 접수됨

④ 당선작 선정
- 심사일시 : 2020. 9. 18.
- 8명의 심사위원이 서울특별시 공간개선단에서 권고한 투표제로 당선작을 선정
- 3번의 투표로 ㈜△△△△ 건축사사무소 작품이 당선되고 ☆☆☆☆☆☆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설계용역을 계약함.

다. 준공의 적정성

1) 과업지시서의 성과품 제출이 대부분 완료됨
- 설계안전성 대상으로 파악되나 안전성 검토여부가 확인 안 됨

- 준공조서가 제출되지 않아 준공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수 없음

2) 설계도서의 내용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

- 1층 정원의 출입이 매우 복잡하고 동선이 확보되지 않음
- 1층에 남자장애인화장실과 남자화장실만 있어 상담 등을 위한 여성 내원자의 경우 3층을 사용해야하는 불편이 있음
- 주방이나 관리실 등 서비스 동선이 이용자 동선과 겹쳐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주출입구에 캐노피 고려

[3] 종합판단

가. 저출산, 사회적 불평등을 경감과 산모와 신생아의 공공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이 사업의 추진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우리구의 현황으로 볼 때 더 많은 수의 산후조리실이 필요하나 모자보건센터의 기능도 매우 중요하여 추진과정 중 민원도 해소하며 기능변경과 규모 확대를 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설계공모와 당선작 선정의 모든 과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지하의 흙막이 지보공이 2m이상으로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이나 안전성 검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 각 도면상의 불일치와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및 의견표명

가. 법적 사항을 체크하여 설계안전성 검토를 보완하기 바람.〈권고〉

나. 1층 정원의 용도가 단지 조망용이 아니라면 안전하고 편리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바람. 〈의견표명〉

다. 1층에 여자화장실 고려하기 바람.〈의견표명〉

라. 주방이나 관리실 등 서비스 동선이 이용자 동선과 가급적 겹치지 않게 계획하기 바람.〈의견표명〉

마. 주출입구에 캐노피 고려하기 바람 〈권고〉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축 설계용역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축 설계 ● 사업기간 : 2020.12.~2021.6. ● 사업내용 -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위 치 : 홍은동 426-3,7 ● 사 업 비 : 221,137천원 ● 현 공 정 : 100%(2021.6.14.준공)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216,715,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216,715,000원 ● 계 약 일 : 2020-12-09 (착수일 : 2020-12-10) ● 발주방식 : 수의계약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4,422천원 ● 준공정산 : 221,137천원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사업의 적정성

1) 추진배경

1995년부터 사용한 기존건물(서대문구 현재 사용 중인 2개 건물 중 구관)은 가설건축물로 건물이 낡고 시설이 낙후되어 개축이 요구되던 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재활용센터 개선 사업에 우선 사업 대상구로 선정되어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건립하고 심각한 쓰레기 문제 해결 및 재사용 재활용 문화 확산, 재활용 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 내 자원순환 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추진근거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운영 등)

②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기본계획(시자원순환과-573호 ‘19.1.10.)

3) 서대문구 센터현황 및 추진 후 기대효과

① 현황

- 신관, 구관 2개 건물을 전시장 및 작업장, 직능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취급 물품이 한정(가전, 가구)되고 별도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없음

② 기대효과

- 재사용 재활용허브로 조성하며 공정관리, 안전점검 등 사업단계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체험교육 자원순환 교육 등을 운영하는 자원순환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여 분리배출량을 증가시키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재활용문화 활성화, 재활용품 성상개선을 통해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순환이용률을 증가시켜 자원순환지표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4) 사업규모 및 사업비

①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270.96㎡)

② 사업비 4,732백만원 (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

나. 설계공모와 계약의 적정성

창의성 예술성 실용성 등을 갖춘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용역을 추진

1) 추진근거

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②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 2019.4.30.)

③ 공공건축 설계공모 절차 및 기준(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2016.10.)

2) 공모개요

① 공모기간 :2020. 7. 20. ~ 10. 20.

②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

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 5인 이하 범위에서 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

③ 참가업체 : 최종 6개 작품이 접수됨

④ 당선작 선정
- 심사일시 : 2020. 11. 3.
- 7명의 심사위원이 각각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공간개선단에서 권고한 심사방법에 의해 투표제로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심사위원별로 당선작 선택에 대한 주관적 선정이유를 평가사유서에 기재함
- 가장 많이 득표한 건축사사무소 ＊＊＊의 작품이 당선되고 설계용역을 계약함.

다. 설계 변경과 준공의 적정성

1) 설계변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1항3호에 의해 설계 안전성검토가 추가되어 준공기한 7일 연장 및 설계비 4,422,000원이 증가됨

※참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2. 1.>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6. 5. 17., 2016. 8. 11., 2018. 1. 16., 2019. 12. 24., 2021. 1. 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제98조의1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 준공

도면상 한두 가지 기재 오류는 있으나 과업서의 내용대로 잘 설계되었고 준공 시 과업지시서의 요구대로 성과품이 모두 제출됨.

[3] 종합판단

가. 사업의 목적과 시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나. 업체 선정 방식으로 설계공모 방식을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최다득표한 해당업체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라. 설계변경의 사유와 준공의 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조치의견 : 해당사항 없음

2020년 집중호우 피해지(홍제동 471등 2개소) 복구공사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집중호우 피해지 (홍제동 471등 2개소) 복구공사 ● 사업기간 : 2020. 10. 30. ~ 12. 29. ● 사업내용 - 조경석쌓기(38m2), 큰돌기슭막이(63m2), 깬돌기슭막이(57.2m2), ● 위 치 : 홍제동 471, 홍은동 산19-19 ● 사 업 비 : 177,034,000원 ● 준 공 : 2020. 12. 29.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169,004,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148,734,000원 (낙찰율 : 87.773%) ● 계 약 일 : 2020-10-29 (착수일 : 2020-10-30) ● 발주방식 : 전자수의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증 28,300,000원 ● 준공정산 : 177,034,000원

2020년 7. 26. ~ 8. 15.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해 산림 내 사면 및 석축이 붕괴되어 「2020년집중 호우 피해지(홍제동 471번지 일원 및 홍은동 산 19-19 일원) 복구 공사」를 긴급 시행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전자공개수의계약

2) 입찰자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산림사업에 대하여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산림조합(지역)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산림토목)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공사의 타당성

조경석 쌓기 38㎡, 옹벽 설치 24m, 깬돌기슭막이 23.8㎡를 하였다.

다. 설계변경

반중력식 옹벽 24m를 큰돌기슭막이 63㎡로 변경, 깬돌기슭막이 23.8㎡를 57.2㎡로 변경, 사토 소운반 25㎥를 63㎥로 변경, L형 측구 연장 등을 변경하였다.

[3] 종합판단

가. 계약방법 및 입찰자격은 적정하며, 이에 의하여 ㈜☆☆☆☆이 선정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복구공사는 타당하며, 설계변경에 있어서 반중력식 옹벽 24m를 큰돌기슭막이, 깬돌기슭막이, L형 측구 등으로 변경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큰돌기슭막이 63㎡로 변경하고 깬돌기슭막이 23.8㎡가 57.2㎡로 변경하였으나 수량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큰돌기슭막이는 상세도(도면번호 21-9)와 같이 뒷채움 등을 고려하여 쌓아야 하나 정비계획도(도면번호 2-2)와 같이 시공되었으므로 이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사면의 안정성 검토 없이 보강공사를 한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었으므로 추후에는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가. 사토 소운반 25㎥를 63㎥로 변경에 대한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나. 큰돌기슭막이는 상세도(도면번호 21-9)와 같이 쌓아야 하나 정비계획도(도면번호 2-2)와 같이 시공되었으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수량 산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다. 사면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2020년 집중호우 피해지(현저동 1-150등 3개소) 복구공사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집중호우 피해지 (현저동 1-150등 3개소) 복구공사 ● 사업기간 : ‘20. 10. 30. ~ 12. 30. ● 사업내용 - 낙석방지책(25경간), 각관흙막이(36경간), 깬돌흙막이 설치(32m) ● 위 치 : 현저동 1-150, 연희동 434-11, 홍제동 460-5 ● 사 업 비 : 128,600,000원 ● 준 공 : 2020.12.30.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146,652,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129,970,000원 (낙찰율 : 88.153%) ● 계 약 일 : 2020-10-29 (착수일 : 2020-10-30) ● 발주방식 : 전자수의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증 1,290,000원 ● 준공정산 : 128,600,000원

2020년 7. 26. ~ 8. 15.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해 산림 내 사면 및 석축이 붕괴되어 「2020년집중 호우 피해지(현저동 1-150 등 3개소) 복구 공사」를 긴급 시행하였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전자공개수의계약

2) 입찰자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산림사업에 대하여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산림조합(지역)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산림토목)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공사의 타당성

낙석방지망 설치 172㎡, 옹벽설치 50.5m, 낙석방비책 설치 25경간 등을 하였다.

다. 설계변경

현저동 1-150번지의 기존 석축이 안정화 되어 있어 존치 및 보수 시공하는 것으로 돌쌓기 철거 75㎡, 석축 철거 50m, 옹벽설치 50.5m를 감하고, 각관 흙막이 36경간, 병꽃나무, 산철쭉, 조팝나무, 화살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3] 종합판단

가. 계약방법 및 입찰자격은 적정하며, 이에 의하여 ㈜△△△△이 선정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연희동 434-11과 홍제동 460-5 지역의 피해복구공사는 타당하나, 현저동 1-150 지역은 당초와 다르게 돌쌓기 철거 75㎡, 석축 철거 50m, 옹벽설치 50.5m를 감한 바, 이는 과다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현저동 1-150 지역의 돌쌓기 철거 75㎡(91,800원), 석축 철거 50m(174,200원), 옹벽설치 50.5m(15,250,495원)를 감하여 식재 등으로 설계변경 한 바, 이는 총액 범위 내이나 공정변경이 10%이상이므로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감사담당관-11477, 2019.11.27.)으로 판단된다.

라. 현저동 1-150 지역과 연희동 434-11 지역의 각관 흙막이 설치는 사전에 사면 안정성 검토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감사요구 및 권고

가. 돌쌓기 철거 75㎡, 석축 철거 50m, 옹벽설치 50.5m를 감하여 설계 변경

하였으므로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감사요구함. <감사요구>

나. 각관 흙막이 설치 구간은 사면 안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권고>

실락어린이공원 석축 정비사업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실락어린이공원 석축 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20. 11. 13. ~ 12. 22. ● 사업내용 - 석축 몰탈 채움 및 물구멍 설치, 휀스 교체 등 ● 위 치 : 실락어린이공원(홍은동 455-4) ● 사 업 비 : 64,962,790원 ● 준 공 : 2020.12.22.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67,441,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59,062,790원 (낙찰율 : 87.76%) ● 계 약 일 : 2020-11-12 (착수일 : 2020-11-13) ● 발주방식 : 전자수의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5,900,000원 ● 준공정산 : 64,962,790원

실락어린이공원 석축 정비사업(홍은동 455-4)은 노후되고 파손된 공원 석축을 정비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전자계약(조달청 G2B를 통한 전자 계약)

2) 입찰자격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서울특별시인 업체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

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공사의 타당성

깬돌쌓기 21.5㎡, 산돌쌓기 32m를 하였다.

다. 설계 변경

천단콘크리트 12m 삭감, 식물매트 식재 150㎡ 삭감, 화살나무 식재 470주 증가, 관목이식 80주 증가에 따른 물량 조정

[3] 종합판단

가. 계약방법 및 입찰자격은 적정하며, 이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낙찰되었다.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설계 변경은 현장 여건 및 주민 민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깬돌쌓기 21.5㎡, 찰쌓기 3.5㎡의 물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단면도(혹은 전개도)가 있어야 한다. 도면 없이 수량을 산출하여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물구멍 PVC파이프 Φ50mm(L=500㎝)를 2㎡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것(도면번호 07)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도면 및 산출서의 수량은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하천변 식생 및 조경시설 정비

[1]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하천변 식생 및 조경시설 정비 ● 사업기간 : 2020.12.03.~12.27. ● 사업내용 - 하천변 관목보식 및 안내판 정비 등 ● 위 치 : 홍제천(홍제교~홍은교), 홍제천(홍남교), 불광천(증산2교~증산3교) ● 사 업 비 : 29,018,300원 ● 준 공 : 2020.12.24.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34,312,71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29,649,900원 (낙찰율 : 87.929%) ● 계 약 일 : 2020-12-02 (착수일 : 2020-12-03) ● 발주방식 : 전자수의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감 631,600 원 ● 준공정산 : 29,018,300원

하천변 식생 및 조경시설 정비 사업은 하천의 치수 및 이수 기능 위주의 유지관리에 따라 상실된 하천 고유의 식생을 회복하고 생태적인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하천 경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 전자입찰
- 수의(소액),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2) 입찰자격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서울특별시인 업체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 공사의 타당성

홍제천(홍제교~홍은교) 구간에 산철쭉 1000주와 물억새 식물매트, 홍제천(홍남교)에 조경석 쌓기 철거(8.0m), 자연석 쌓기(16.5m)와 수크령 식물매트, 불광천(증산2교~증산3교) 구간에 회양목(300주) 등 식재공사와 수크령 식물매트 공사

다. 설계 변경

자연석 쌓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조정

[3] 종합판단

가. 계약방법 및 입찰자격은 적정하며, ㈜○○○○에 낙찰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홍제천(홍제교~홍은교) 구간에 산철쭉 1000주와 물억새 식물매트, 홍제천(홍남교)에 조경석 쌓기 철거(8.0m), 자연석 쌓기(16.5m)와 수크령 식물매트, 불광천(증산2교~증산3교) 구간에 식재공사와 수크령 식물매트 공사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식재 선정이 주변 수종과 통일감을 주기 위하여 선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홍수위 아래에 있는 부분은 홍수위를 고려하여 식재 선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의견표명

식재 선정은 홍수위를 고려하고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홍은동 산11-18 등 3개소]

[1] 사업개요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홍은동 산11-18 등 3개소) ● 사업기간 : 2021. 4. 14. ~ 6. 29. ● 사업내용 - 석축쌓기(42.8m2), 콘크리트수로(98m), 제형돌수로(48m) ● 위 치 : 홍은동 산11-18, 홍은동 산 11-96, 홍제동 78 ● 사 업 비 : 197,758,000	입찰 또는 계약 현황	● 발주금액 : 229,669,000원 ※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계약금액 : 200,331,060원 (낙찰율 : 87.756%) ● 계 약 일 : 2021-04-02 (착수일 : 2021-04-14) ● 발주방식 : 전자수의
		계약 내용 변경 현황	● 설계변경 횟수 : 1회 ● 계약금액 증감 : 감 2,573,060원 ● 준공정산:190,876,000(보험료 감)

2021 산사태 예방사업은 홍은동 산11-18, 홍은동 산 11-96, 홍제동 78에 대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청렴계약 감시활동 내용

가. 계약의 적정성

1) 계약방법: 전자공개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항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2) 입찰자격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로 등록된 업체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토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공사의 타당성

석축헐기 2.3㎡, 제형 돌수로 48m, 수목제거 등을 하였다.

다. 설계 변경

현장 타설 콘크리트 수로 98m를 플륨관 98m로 변경, 현장 타설 J형 측구 36m를 호박돌 찰붙임 수로 변경, 낙하물 방지 비계 설치 및 해체 30㎡를 증가하였다.

[3] 종합판단

가. 계약방법 및 입찰자격은 적정하며, 이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낙찰되었다.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석축헐기 2.3㎡, 제형 돌수로 48m, 수목제거 등의 공사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형 돌수로(도면번호 15-8)의 뒷채움 잡석(폭 30㎝)이 사진 대지에 나타나지 않는 바, 시공 유무를 판단할 수가 없다.

다. 설계 변경에 있어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 측구가 플륨관으로 바뀐 이유가 불투명하며, 설계 변경을 할 경우에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당초 설계물량을 산출할 경우에도 도면(단면도 및 상세도)이 필요하지만, 준공 시에는 준공 물량을 산출하고, 시공을 위한 상세도 등이 있어야 추후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조치의견 : 권고

가.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법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를 바람

나. 준공 물량 산출을 위한 상세 도서를 첨부하고, 제형 돌수로의 뒷채움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대지를 첨부하기 바람

2021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보고서

2022년 3월 발행

발 행 처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주　　소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168-6)
전화번호 02)3140-8301
홈페이지 http://www.sdm.go.kr
청렴신문고 http://clean.sdm.go.kr